

2025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등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의안번호 : 제3696호, 제3697호, 제3698호
- 다. 제출일자 : 2026. 5. 26.
- 라. 회부일자 : 2026. 5. 27.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 제1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3. 결산개요

가. 일반회계

1) 세입결산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 산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정리보류액 (C)	미수납액 (A-B-C)	수납율(%) (B/A)
2025	10,616	10,616	16,209	10,599	69	5,540	65.4

- 세입예산현액은 106억 16백만원이었으나 실제 106억 16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 중 105억 99백만원을 수납하고, 69백만원은 정리보류하여 55억 40백만원이 미수납되었음. 수납율은 징수 결정액 대비 65.4%임.

2)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25	90,968	17,936	4,348	51 (-51)	-	8,767	113,252	99,566	8,617	1,587	7,030	15	5,055 (4.5%)

- 예산액 909억 68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79억 36백만원, 예비비 사용 43억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132억 52백만원으로, 이 중 87.9%인 995억 66백만원은 지출하고 7.6%인 86억 17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01%인 15백만원은 보조금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5%인 50억 55백만원이 발생되었음.

3) 예산 이용 · 전용 · 변경 · 예비비 · 이체

○ 이용 : 해당없음

○ 전용 : 해당없음

○ 변경 사용

- 예산 변경 사용은 2건에 51백만원으로
- 우이천(노원구) 수변활력거점 조성 50백만원
- 물순환 정책 활성화 1백만원

○ 예비비 사용

- 예비비 사용은 2건에 43억원으로
- 하천 편입토지 보상 3억 75백만원
- 유상 매각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39억 72백만원임.

○ 이체

- 예산이체는 8건에 87억 67백만원으로
- 중랑천수계 하천유지용수 공급 유지관리 3억 58백만원
- 정릉천(동대문구) 유지용수 추가 공급 15억 58백만원
- 성내천(송파구) 유출지하수 관로 정비공사 35억원
- 불광천(서대문구) 하상여과시설 정비 17억 81백만원
- 홍제천, 불광천(서대문구) 유지용수 수질개선 정비공사 1억 40백만원
- 반포천(서초구) 유지용수 공급 배전반 교체 1억 80백만원
- 고덕천(강동구) 제1유지용수 공급방식 개선 2억임.

4)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다음년도 이월비는 계속비이월은 없고, 명시이월 규모는 총 15억 87백만원으로 예산현액 1,132억 52백만원 대비 1.4%이며, 사고이월 규모는 총 70억 31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2%임.

5) 보조금 반납금

- 보조금 반납금은 15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1,132억 52백만원 대비 0.1%에 해당함.

6)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50억 55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1,132억 52백만원 대비 4.5%에 해당하는 규모임.

집행잔액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 산 현 액	집 행 잔 액	불 용 률 (%)	비 고
2025	113,252	5,055	4.5	

- 발생원인별 내역

- 낙찰차액 등 지출잔액 : 37억 50백만원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12억 86백만원

나. 도시개발특별회계

1) 세입결산

세입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수납율(%) (B/A)
2025	21,598	21,598	15,598	15,598	-	-	100

- 예산현액 215억 98백만원 대비 100%인 215억 98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15억 98백만원을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세출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25	116,627	105,856	-	-	-	-	222,484	98,630	96,216	45,942	50,274	4,501	23,136 (10.4%)

- 예산액 1,166억 27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058억 56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224억 84백만원으로, 이 중 44.1%인 986억 30백만원은 지출하고 43.2%인 962억 16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4%인 231억 36백만원이 발생되었음.

3) 예산이용·전용·변경·예비비·이체

- 이용 : 해당없음

○ 전용 : 해당없음

○ 변경

- 예산 변경은 3건에 2억 78백만원으로
- 오류천(구로구) 단면확장,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사업, 도림천(관악구) 단면확장 사업 시설비를 감리비로 변경임

○ 예비비 : 해당없음

○ 이체 : 해당없음

4)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다음년도 이월비는 계속비이월은 없고, 명시이월 규모는 총 459억 42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은 2,224억 84백만원 대비 19.3%이며, 사고이월 규모는 총 502억 74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3.9%임.

5) 보조금 반납금

- 보조금 반납액은 45억 1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임

6)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231억 36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2,224억 84백만원 대비 10.4%에 해당하는 규모임.

집행잔액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 현액	집행 잔액	불용 률 (%)	비 고
2025	222,484	23,136	10.4	

- 발생원인별 내역

- 보조금 정산잔액 : 4억 6백만원
-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 227억 30백만원

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 세입결산

세입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 산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수납율(%) (B/A)
2025	29,383	29,453	28,872	28,872	-	-	100.0

- 세입 예산현액은 294억 53백만원으로 288억 72백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이 중 288억 72백만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100% 수납됨.

2) 세출결산

세출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변경	전용	이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25	29,383	70	-	-	-	-	29,453	27,861	50	-	50	583	959 (3.3%)

- 예산액 293억 83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70백만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294억 53백만원으로, 이 중 94.6%인 278억 61백만원은 지출하고, 2.0%인 5억 83백만원은 보조금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3%인 9억 59백만원이 발생되었음.

3) 예산 이용 · 전용 · 변경 · 예비비 · 이체

- 이 용 : 해당없음
- 전 용 :

- 예산 전용 사용은 1건에 1백만원으로
- 잠실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1백만원임

○ 변 경 :

- 예산 변경 사용은 1건에 60백만원으로
- 동행서울 친환경농장 가꾸기 60백만원임

○ 예비비 : 해당없음

○ 이 체 : 해당없음

4)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다음연도 이월비는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 규모는 총 50백만원으로 예산현액 294억 53백만원 대비 0.2%임

5) 보조금 반납금

- 보조금 반납금은 5억 83백만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294억 53백만원 대비 2.0%에 해당함

6)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9억 59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294억 53백만원 대비 3.3%에 해당하는 규모임.

집 행 잔 액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 산 현 액	집 행 잔 액	불 용 률 (%)	비 고
2025	29,453	959	3.3	-

- 발생원인별 내역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5억 23백만원
- 지출잔액 : 1억 68백만원
- 예비비 : 2억 68백만원

라.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기금운용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수입								지출						
	계	전년도 이월액	전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이자 수입	예치금 회수	예탁금 원금 회수	기타	계	고유목적 사업비 등	예치금	예탁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	다음연도 이월액
2025	95,431	-	-	-	3,307	92,124	-	-	95,431	-	76,221	-	-	19,210	-
2024	92,124	-	15,601	-	3,291	73,231	-	-	92,124	-	92,124	-	-	-	-
2023	73,231	-	20,000	-	2,938	50,293	-	-	73,231	-	73,231	-	-	-	-
2022	50,293	-	49,646	-	647	-	-	-	50,293	-	50,293	-	-	-	-
2021					해	당	없	음							

- 수입은 이자수입 33억 7백만원, 예치금회수 921억 24백만원을 합한 954억 31백만원이며, 예치금 762억 21백만원과 기타지출(중량물재생센터 현대화공사 2-1단계 사업비 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 192억 10백만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음.

4. 검 토 의 건

가. 일반회계

1) 세 입 결 산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 산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정리 보류액(C)	미수납액 (A)-(B)-(C)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B/A)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 월 액	
2025	10,616	10,616	16,209	10,599	69	5,540	-	5,540	97.6
2024	27,969	27,969	33,660	28,093	4	5,563	-	5,563	83.5
2023	22,035	22,035	27,661	24,474	43	3,144	-	3,144	88.5

가) 개요

- 세입예산현액은 106억 16백만원이었으나 실제 162억 9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 중 105억 99백만원을 수납하고, 69백만원은 정리보류하여 55억 4천만원이 미수납되었음. 수납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7.6%임.

나) 세수추계(결산서 p19~24)

- 금회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의 경우 세입예산액 대비 152.7%로 총 55억 93백만원의 차가 발생하였는데,
 - 이는 지난 2024회계연도의 예산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인 155.7%(59억 71백만원)와 비교하여 3.0%p 낮아진 수치이나 여전히 150%를 상회하는 과도한 괴리가 있는 상황으로,

- 세입예산과 실제 징수액 간의 격차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바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해 보임.

- 일부 세입 중 세수추계의 정확도가 낮았던 항목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가 과다한 항목들

(단위: 백만원)

편성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차액 (b)-(a)	사 유
세외수입					
그외수입 (수변감성도시과)	-	17	3	17	· 수변감성도시 조성을 위한 불광천 기초환경 정비공사 담당 착오로 인한 이중부과 ※공기업회계로 수납되어 부과 취소 후 2026회계연도 세입처리 예정
그외수입 (치수안전과)	-	188	185	188	행정재산 손실보상금 등 예상외 수입 발생
지난년도수입 (치수안전과)	78	5,514	35	5,436	과년도 체납분으로 징수결정액은 체납액 전체를 기준으로 하나 예산액은 평균 징수액 기준 편성

-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수변감성도시과 ‘그외수입’은 당초 세입예산액은 없었으나 징수결정액이 1천 7백만원으로 증가하였음.
- 이는 ‘기술심사담당관의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 실태 순회점검1)’ 결과에 따라 은평구를 대상으로 시비 환수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관계 부서인 수변감성도시과와 물재생계획과가 각각 동일건으로 고지서를 발부함으로써 이중 부과에 따른 것으로,
- 은평구청은 물재생계획과에 납부하였으나 회계상 공기업하수도

1) 기술심사담당관-12896호(2025.7.4.)

사업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납부할 사항이기에 해당 오수
납분은 물재생계획과가 반납 처리하고 은평구청은 수변감성도
시과로 납부 절차를 거쳐 정상화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됨.

- 이처럼 부서 간 소통 미흡으로 고지서가 이중 발부되어 불필요
한 ‘과오납 반납’ 및 ‘재납부’라는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였는바,
 - 추후 다수 부서가 연계되어 세외수입을 징수할 때는 총괄 부서
를 지정하여 부과 현황을 통합 관리하거나 고지서 발급 전 사
전 검증을 의무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다음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중 치수안전과 ‘그외수입’의 경우
당초 예산액은 없었으나, 징수결정액 1억 88백만원으로 1억
88백만원이 순증하였음.
- 이는 '23년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서울시가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물막이판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비비 8억
원을 편성하여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를 근거로 사업비를 교부
하였으나, 실제 설치 실적은 40.7%에 수준([표] 참조)에 그쳐
미집행 사업비가 반납됨에 따른 것임.
 - 이처럼 사업비 반납이 발생한 것은 예산 배정 단계에서 자치
구별 집행 여건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던 결과로,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에는 수요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
한 관리가 요구된다 하겠음.

[표] 자치구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지원사업 예산 배정 및 집행 내역

구 분		설치현황 (단지)	예산배정 (자치구 신청)	예산집행 내역(단위: 천원)				비고
				사업내역 (공동주택과 확인)		'25년 손실보상금 내역		
				집행액	미 집행액	반납액 (이자포함)	채납액 ('27년 재발급 및 조치예정)	
계		109	800,000	325,699	474,301	466,458	'27 조치예정	40.7%
1	광진구	4	15,000	10,863	4,137	4,358	-	72.4%
2	중랑구	6	20,000	17,828	2,172	2,350	-	89.1%
3	성북구	1	7,500	7,500	-	-	-	100.0%
4	서대문구	4	37,500	12,183	25,317	26,276	-	32.5%
5	양천구	16	122,500	40,790	81,710	85,279	-	33.3%
6	강서구	6	30,000	14,470	15,530	19,130	-	48.2%
7	구로구	2	5,000	0	5,000	5,130	-	0.0%
8	동작구	28	222,500	116,890	105,610	110,680	-	52.5%
9	관악구	9	17,500	0	17,500	18,212	-	0.0%
10	서초구	13	115,000	49,638	65,362	68,837	-	43.2%
11	강남구	11	130,000	29,166	100,834	105,478	-	22.4%
12	송파구	1	20,000	0	20,000	20,728	-	0.0%
13	강동구	8	57,500	26,371	31,129	-	'27 조치예정	45.9%

※ 사업비마련: 치수안전과 / 사업추진: 공동주택과

○ 다음으로, 치수안전과 ‘지 난 년 도 수 입’의 경 우 예 산 액 7,800만 원 대비 징수결정액 55억 14백만원으로 54억 36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이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최근 2개년도('23~'24년) 평균 징수율 3%를 기준으로 실제 징수 가능성을 보수적으로 반영한 반면, 징수결정액은 이월 채납액 전액을 기준으로 계상함에 따라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간 괴리가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 동 세입의 경우 채납액의 회수 가능성에 따라 실제 세입 규모가 달라지는 특성이 있어, 현행 세입예산 편성 방식에서는 이와 같

은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하겠음.

- 다만, 이러한 괴리가 반복될 경우 세입예산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는 만큼, 별도의 산정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을 검토할 필요도 있어 보임.

[표] 최근 3년간 지난연도수입 징수결정액 차이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a)	징수결정액(b)	(b)-(a)
2025	78	5,514	5,436
2024	100	5,588	5,488
2023	95	5,013	4,921

다) 미수납액(결산서 p19~24)

- 물순환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미수납 총액은 55억 4천만원이며, 미수납에 따른 차년도 이월액 55억 4천만원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차년도 이월액	55억 40백만원
- 하천사용료	22백만원
- 변상금	82백만원
- 지난년도수입	54억 18백만원
- 기타(그외수입, 기타이자수입 등)	17백만원

- 이 중 ‘지난년도수입(소송비용 과년도 체납액 등)’이 54억 18백만원으로 전체이월액의 97.9%를 차지하고 있음.

- 이는 고질적인 장기 체납에 기인한 것으로 매년 유사한 규모로 반복되고 있는바 초기 체납 방지와 고질적 체납에 대한 보

다 강력한 징수 조치가 필요하다 하겠음.

- 다음 [표]에서 미수납액의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미수납액의 차년도 이월액 중 대부분은 “납세태만(49억 35백만원)”이 차지하고 있는데,
 - 이에 대한 문제가 매년 반복되어 지적되고 있는 만큼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예금, 직장 등을 조사해 압류 조치하는 한편,
 - 자진 납부를 거부하는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은 강제 공매처분을 단행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납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예산운용을 도모해야 할 것임.

[표] 일반회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천원)

미수납액(차년도 이월액)		5,539,917
	납세태만	4,935,410
	무재산	396,689
	폐업 또는 부도	32,796
	자금압박	56,570
	행방불명	90
	기타	118,362

2) 세 출 결 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25	90,968	17,936	4,348	51	-	8,767	113,252	99,566	8,617	1,587	7,030	15	5,055 (4.5%)
2024	130,208	19,710	800	1,911 (-1,911)	4 (-4)	945 (-945)	150,718	130,267	14,149	600	13,549	9	6,293 (4.2%)
2023	98,516	16,696	-	1,177 (-1,177)	-	884 (-884)	115,212	88,360	19,710	5,084	14,626	2,477	4,665 (4.0%)

가) 개 요

- 예산액 909억 68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79억 36백만원, 예비비 사용 43억 48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132억 52백만원으로, 이 중 87.9%인 995억 66백만원은 지출하고 7.6%인 86억 17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01%인 15백만원은 보조금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5%인 50억 55백만원이 발생되었음.

나) 집행잔액(불용액)(결산서 p.47~57)

-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5%인 50억 55백만원이며, 불용율 30% 이상(불용액 3억원 이상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은 ‘유출지하수 배수설비 시범사업’ 등 4건(아래 [표] 참고)에 해당함.

[표] 불용률 30%이상 또는 불용액 3억원 이상 사업 현황(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과)	사 업 명	예 산 내 역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내역	
					불용액	비율(%)
1	수변감성도시과	유출지하수 배수설비 시범사업	332	-	332	100
2	치수안전과	정밀안전진단(빗물펌프장, 수문 등 용역)	3,322	2,649	577	17.4
3	치수안전과	빗물펌프장 노후 배수설비(펌프, 제진기, 밸브 등) 개량 및 시설보강	8,633	7,412	958	11.1
4	치수안전과	중랑천 마스터플랜 단기사업	4,428	3,714	714	16.1

- ‘유출지하수 배수설비 시범사업’은 민간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의 이용확대를 위해 배수설비 설치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예산현액 3억 32백만원 전액을 불용하였음.
- 당초 서울시는 유출지하수 발생량이 많고 탄천에 인접하여 사업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 특정 공공주택(헬리오시티)을 대상²⁾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입주자대표위원회 의견 불일치 및 지하수·우수 배관 분리 불가 등의 사유로 사업이 무산되었고,
- 이후 대체지 선정을 위해 실시한 자치구 공모 절차³⁾에서도 유일하게 신청했던 건축물(송파더플래티넘)이 공사비 과다에 따른 경제성 부족으로 신청을 취소⁴⁾함에 따라 대안 사업의 추진마저 어려워 예산 전액을 불용 처리한 것임.

2) (헬리오시티 우선 대상 선정 사유) 민간건축물 중 유출지하수가 가장 많이 발생(855톤/일) 및 하천 인접(탄천 70m)하여 사업 효과 우수 예상

3) (공모대상) 유출지하수 다량(200톤/일 이상) 발생 및 하천 인접(300m 이내)한 서울시 소재 10개 민간건축물 (※ 경제성 확보 위해 대상 제한)

4) (신청 취소 사유) 추정 공사비가 최초(송파구, 1억 2천만원) 대비 현장 조사 결과 약 2배 증가(2억 2천만원 이상)하여 입주민 내부 협의 후 신청 취소

- 이는 사업 기획 단계에서 민간 건축물의 복잡한 이해관계, 현장 시공 가능성(배관 분리 여부), 실질적인 수요 및 경제성 등을 면밀히 조사·예측하지 못한 것에 기인하므로,
 - 향후 유사한 시범사업 추진 시에는 실현 가능하고 정밀한 사전 수요조사와 기술적 검토를 선행함으로써 이와 같은 예산 사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중랑천 마스터플랜 단기사업’은 중랑천을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생활·문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44억 28백만원 중 16.1%인 7억 14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당초 동 사업은 중랑천 내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등을 포함하여 총 3,130m 구간을 정비할 계획이었으나, '25.2월 환경단체에서 중랑천-청계천 합류부 둔덕(토사 임시 적치 구간)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맹꽁이’⁵⁾의 서식처라는 민원⁶⁾이 제기됨에 따라,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멸종위기 야생생물’

4. 양서류·파충류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5. 맹꽁이(Kaloula borealis)

6) □ 잔토처리 관련 민원현황

○ 민 원 인 :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환경단체)

○ 요구내용 : 맹꽁이 서식처 및 야생동물 피난처 보호 요구

- 중랑천과 청계천 합류부의 둔덕(토사 임시 적치 구간)은 맹꽁이 서식처 및 야생생물 피난처로 토사 반출 중단 요구 등 공사 방해

※ 맹꽁이(양서류) :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 2025. 2. 26. : 적치토사 존치 요청(염형철 외 3인 → 치수안전과)

▶ 2025. 3. 14. : 환경단체 현장방문

→ 맹꽁이 서식처 및 야생동물 피난처 보호를 위한 기점 표시

▶ 2025. 3. 17. : 현장 회의(감리단장 주재, 시공사 및 환경단체)

→ 임시 적치 토사로 반출 불가피, (환경단체) 공사 강행시 언론 등 대응

▶ 2025. 3. 18. : 환경단체 공사 방해로 토사반출 중단

- 서울시는 생태계 보호를 위해 사업 구간을 3,130m에서 693m로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잔여 구간은 성동구가 자체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기로 협의되어 축소된 공사비 및 감리비 잔액 7억 14백만원([표] 참조)이 불용된 것임.
- 이는 하천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사업이 축소됨에 따른 것으로 이해되나 당초 예산 편성 및 사업계획 시 현장 조사가 미흡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하천 정비사업 추진 시에는 면밀한 현장 여건 분석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표] ‘중랑천 마스터플랜 단기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현황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e) (’23→’24)	불용액 (=c-d-e)	불용률 (%)
	최종예산(a)	전년도 이월액(b)	현액 (c=a+b)				
계	4,402	26	4,428	3,714	0	714	16.1
시설비	3,800	0	3,800	3,322	0	478	12.6
감리비	602	26	628	392	0	236	37.6

다) 예산전용⁷⁾

- 해당없음.

▶ 2025. 3. 20. : 환경단체 요구 경계 구간외 토사 반출

7) “예산의 전용”은 “예산편성 이후에 변동된 여건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여 재정운용의 능률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9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에 근거하고 있음.

라) 예산이체 8)(결산서 p.75~76)

○ 예산이체는 8건에 87억 67백 만원으로

- 이는 '25.7.1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이 개정⁹⁾되어 기존에 치수안전과에서 담당하였던 하천 유지용수 관리 업무를 수변감성도시과로 이관함에 따라 2025회계연도 기정예산을 이체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표] 예산 이체 현황(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합계				8,767	8,767	8,767	
1	치수안전과	중랑천수계 하천유지용수 공급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297	297	-	수변감성도시과-2011 (2025.2.10.) "-수변감성도시 실현을 위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계획"
	수변감성도시과	중랑천수계 하천유지용수 공급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	-	297	
	치수안전과	중랑천수계 하천유지용수 공급 유지관리	206-01 재료비	41	41	-	
	수변감성도시과	중랑천수계 하천유지용수 공급 유지관리	206-01 재료비	-	-	41	
	치수안전과	중랑천수계 하천유지용수 공급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20	20	-	
	수변감성도시과	중랑천수계 하천유지용수 공급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	-	20	
2	치수안전과	정릉천(동대문구) 유지용수 추가공급	401-01 시설비	787	787	-	
	수변감성도시과	정릉천(동대문구) 유지용수 추가공급	401-01 시설비	-	-	787	
	치수안전과	정릉천(동대문구) 유지용수 추가공급	401-01 시설비	-	-	158	
	수변감성도시과	정릉천(동대문구) 유지용수 추가공급	401-01 시설비	158	158	-	
	치수안전과	정릉천(동대문구) 유지용수 추가공급	401-02 감리비	213	213	-	
	수변감성도시과	정릉천(동대문구) 유지용수 추가공급	401-02 감리비	-	-	213	

8) “예산의 이체”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때에 예산을 이에 따라 변경시키는 것을 말함

9) [시행 2025. 7. 1.] [서울특별시규칙 제4706호, 2025. 7. 1., 일부개정]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치수안전과	정릉천(동대문구) 유지용수 추가공급	401-02 감리비	400	400	-	
	수변감성도시과	정릉천(동대문구) 유지용수 추가공급	401-02 감리비	-	-	400	
3	치수안전과	성내천(송파구) 유출지하수 관로 정비공사	401-01 시설비	1,050	1,050	-	
	수변감성도시과	성내천(송파구) 유출지하수 관로 정비공사	401-01 시설비	-	-	1,050	
4	치수안전과	정릉천(성북구) 유지용수 추가공급 사업	401-01 시설비	3,150	3,150	-	
	수변감성도시과	정릉천(성북구) 유지용수 추가공급 사업	401-01 시설비	-	-	3,150	
	치수안전과	정릉천(성북구) 유지용수 추가공급 사업	401-02 감리비	350	350	-	
	수변감성도시과	정릉천(성북구) 유지용수 추가공급 사업	401-02 감리비	-	-	350	
5	치수안전과	불광천(서대문구) 하상여과시설 정비	401-01 시설비	1,716	1,716	-	
	수변감성도시과	불광천(서대문구) 하상여과시설 정비	401-01 시설비	-	-	1,716	
	치수안전과	불광천(서대문구) 하상여과시설 정비	401-02 감리비	65	65	-	
	수변감성도시과	불광천(서대문구) 하상여과시설 정비	401-02 감리비	-	-	65	
6	치수안전과	홍제천, 불광천(서대문구) 유지용수 수질개선 정비공사	401-01 시설비	140	140	-	
	수변감성도시과	홍제천, 불광천(서대문구) 유지용수 수질개선 정비공사	401-01 시설비	-	-	140	
7	치수안전과	반포천(서초구) 유지용수 공급 배전반 교체	401-01 시설비	180	180	-	
	수변감성도시과	반포천(서초구) 유지용수 공급 배전반 교체	401-01 시설비	-	-	180	
8	치수안전과	고덕천(강동구) 제1유지용수 공급방식 개선	401-01 시설비	200	200	-	
	수변감성도시과	고덕천(강동구) 제1유지용수 공급방식 개선	401-01 시설비	-	-	200	

마) 예산변경 10)(결산서 p.79)

- 금회 예산의 변경사용은 2건에 51백만원으로 이 중 ‘우이천(노원구) 수변활력거점 조성’은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물순환 정책 활성화’ 국외업무여비는 ‘빗물관리시설 확충’ 특정업무경비로 변경 사용하였음.

10) “예산의 변경”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표] 예산 변경사용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사 유
				감액	증액		
2건			1,568	51	51		
수변 감성 도시과	우이천(노원구) 수변활력거점 조성	401-01 시설비	1,500	50	-	2025-07-07	감리발주를 위한 예산변경(시설비->감리 비)
	우이천(노원구) 수변활력거점 조성	401-02 감리비	-	-	50		
수변 감성 도시과	물순환 정책 활성화	202-03 국외업무여비	27	1	-	2025-11-25	당초 현원대비 예산 과소편성, 인사이동으로 현원증가 등 사유로 대민활동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빗물관리시설 확충	204-02 특정업무경비	41	-	1		

- 먼저, ‘우이천(노원구) 수변활력거점 조성’ 사업은 시설비 5천만원을 감리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는데, 이는 보완설계 과정에서 실내분수 설치 및 층고상향 조정 등 추가 공종이 발생함에 따라 당초 자체 감리하려던 계획을 전문 건축감리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외부 감리발주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예산을 변경사용한 것임.

바) 예비비(결산서 p.85)

- 예비비 사용은 2건에 43억 48백만원으로, 매매대금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보상비 등 추가확보, 토지 매매대금 반환 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납부를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였음.

[표] 예비비 사용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증감액		변경후 예산액	사용 일자
	정책	단위	세부	목	세목		감	증		
하천 편입토지 보상	치수 및 하천관리	하천복원 및 정비	하천 편입토지 보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375	-	375		'25.11.12.
유상 매각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치수 및 하천관리	하천복원 및 정비	하천 편입토지 보상	배상금 등	배상금	3,972	-	3,972		'25.1.31.

- 먼저, ‘유상 매각부당이득금 반환 소송’과 관련된 예비비 지출은 SH공사가 ‘서울 세곡2 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18.2.27일 서울시와 서울 강남구 자곡동 56-2 외 5필지([표] 참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표] ‘유상 매각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대상 토지 목록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이용 현황	편입면적 (㎡)	유상귀속면적 (㎡)	보상금액(원)
1	자곡동	56-2	도로	하천	78	55	53,671,750
2	자곡동	56-32	하천	하천	44	44	42,213,600
3	자곡동	56-33	하천	하천	91	91	87,305,400
4	자곡동	56-37	하천	하천	1,546	1,010	968,994,000
5	자곡동	56-38	하천	하천	390	390	374,166,000
6	울현동	170-1	하천	하천	5,002	1,557	1,493,785,800
합계							3,020,136,550

- 해당 토지는 구(舊)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 29조¹¹⁾ 및 구(舊)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¹²⁾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SH공사에 무상귀속되어야 할 공공시설 부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에 따라 발생한 것임.

- 이에 대해 법원은 SH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울시의 반환

-
- 11)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시행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주차장·운동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시행자”로 본다.
-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의무를 인정하였고 서울시는 1심 및 2심 패소 후 상고를 제기¹³⁾하였으나 '24.11.28일 대법원에서 최종(3심) 기각¹⁴⁾됨에 따라, '25.1.31일 판결금 30억 2천만원과 이자 9억 52백만원을 더한 총 39억 72백만원([표] 참조)을 예비비로 집행한 건임.

[표] ‘유상 매각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관련 예비비 산출 내역

(단위: 원)

총계(a+b)	원금(a)	이 자	
		기간	금액
3,972,359,871	3,020,136,550	2018.2.28.~2023.2.28.	255,192,354
		2023.3.1.~2025.1.31. (판결금 지급 예정일)	697,030,967
		계(b)	952,223,321

- 동 예비비 지출은 관계기관과의 법령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토지 매각 및 공공시설 귀속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소송 및 그에 따른 재정 부담을 일정

13) ○ 추진경위

- 2009.12.03. : 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국토부고시 제2009-1138호)
- 2010.04.27. : 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계획 승인(국토부고시 제2010-242호)
- 2015.04.15. : 세곡2 시유지 보상협의 통지 및 계약안내(SH공사→서울시)
- 2015.05.08. : 시유지 보상협의를 따른 회신(서울시→SH공사)
- 2015.06.05. : 시유지 유상 매각 완료
- 2017.12.20. : 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국토부고시 제2017-853호)
- 2023.02.13. :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제기(SH공사→서울시)
- 2024.01.19. : 1심 판결선고(원고 승)
- 2024.02.07. : 항소제기
- 2024.07.17. : 2심 판결선고(원고 승)
- 2024.08.22. : 상고제기
- 2024.11.28. : 3심 심리불속행기각(원고 승)

14) □ 소송결과

【 판결선고 : 서울시 패소(2024. 11.28.) 】

○ 판결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3,020,136,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2.28.부터 2023.2.28.까지는 별지 1 표의 ‘기간’ 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같은 표의 ‘이율(연)’ 란 기재 각 해당 이율, 2023.3.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부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있음.

○ 다음으로, ‘하천 편입토지 보상’과 관련된 예비비 지출은 서울시가 ‘양재천 개수공사 및 탄천 등 10개 하천기본계획 고시’ 등에 편입된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551-1 토지에 대해 미지급 용지 보상 절차를 거쳐 토지주(원고)와 협의취득계약을 체결(’25.5.26일)하였으나,

- 서울시가 ’25년도 매매대금 지급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후 예산 확보 후 지급하겠다고 통보(’25.6.4일)하자, 토지주가 이미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근거로 보상금의 즉시 지급을 요구하며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25.9.11일)함에 따라 발생한 것임.

- 이에, 법원은 서울시의 대금 지급 의무 성립을 인정하여 토지주 승소 판결(지급명령)¹⁵⁾을 내렸고, 서울시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용하여 ’25.10.11일 최종 확정됨에 따라, ’25.11.7일 협의취득 원금 3억 6,878만원과 지연이자 642만원 등을 더한 총 3억 7,541만원([표] 참조)을 예비비로 집행한 것임.

15) 서울중앙지방법원(2025. 9. 13.)

- 지급명령 [사건 2025차전120517 매매대금]

- 채권자 이○○

- 채무자 서울특별시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을 지급하라.

- 별지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채무자는 이 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금 368,780,000원

2. 위 1.항의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

※ 독촉절차 비용 203,700원(내역: 송달료 66,000원, 인지액 : 137,700원)

[표] ‘하천 편입토지 보상’ 관련 예비비 산출 내역

(단위: 원)

총 계(a+b+c)	원 금(a)	이 자(b)		독촉절차 비용(c)
375,409,580	368,780,000	기 간	금 액	송달료 66,000 인지액 137,700
		2025.9.16.~ 2025.11.7. (판결금 지급 예정일)	6,425,880	
		계	6,425,880	203,700

- 동 예비비 지출은 서울시가 민간과의 협의 완료 후 예산 확보
미비로 소송을 자초하여 불필요한 법정 지연배상금(연 12%)과
소송 비용을 추가로 발생시켜 시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켰는
바, 행정절차에 따른 예산 배정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하겠음.

사) 차년도 사고이월(결산서 p.187~188)

- 일반회계 차년도 사고이월 규모는 총 예산현액 1,132억 52백만
원 대비 6.2%인 총 70억 3천만원임.
- 사유별 현황(아래 [표] 참고)을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준공기한
미도래 12건 28억 56백만원, 사전절차 지연 및 기타 15건 41억
74백만원 등 총 27건(70억 3천만원)에서 사고이월이 발생함.

[표] 사고이월 사업 사유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사유별	2025	
	건수	이월액
공사추진 중 장애발생	-	-
사업계획변경	-	-
준공기한 미도래	12	2,856
사전절차 및 기타	15	4,174
계	27	7,030

- 이들 사고이월 사업 중 사고이월 금액이 예산현액의 30% 이상 되는 사업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사고이월 30% 이상 사업 현황(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 현액	사고 이월액	집행 잔액	이월률	사 유
16건							
1	수변감성도시과	안양천(금천구) 수변활력거점 조성	2,655	1,000	1	38%	국가하천 점용허가 협의지연에 따라 사업예산 이월 필요
2	수변감성도시과	안양천(양천구) 수변활력거점 조성	700	634	-	91%	하천점용허가 관련 한강유역환경청 협의로 인한 설계 지연에 따라, '25.12.공사발주 및 '26.1월 착공 예정으로 공사비 관련 예산 이월 필요
3	수변감성도시과	우리동네 수변예술놀이터 조성	4,967	4394	2	88%	사업대상지 방재성능 향상을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중곡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선행으로 설계 용역 일정 지연(~'25. 12.)됨에 따라 공사비 사고이월 필요
4	수변감성도시과	우이천(노원구) 수변활력거점 조성	1,500	5144	-	34%	준공기한(2026.3.31.) 미도래에 따른 사고이월 필요
5	수변감성도시과	우이천 교각경관 조명시설 설치	250	2504	-	100%	좋은 빛 심의 등 사업절차 진행중으로 준공시기(2026.6.30.) 미도래에 따라 사고이월 필요
6	수변감성도시과	수변체험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300	277	23	92%	사전절차 이행 및 유찰 등으로 용역 계약이 지연되어 사고이월 필요
7	수변감성도시과	유출지하수 하천방류관로 GIS DB 구축 용역	410	204	7	50%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26.5.29.)로 사고이월 필요
8	수변감성도시과	성내천(송파구) 유출지하수 관로 정비공사	1,050	758	-	72%	다수의 지하매설물 이설 협의, 동절기 도로굴착통제 시행(25. 11. 24. ~ 26. 2. 28.) 등에 따라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 사업 예산 사고이월이 필요
9	치수안전과	수방시스템 고도화	328	153	22	47%	26년 7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사고이월 필요
10	치수안전과	2025년 침수예측 정보시스템 고도화	605	213	-	35%	26년 4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사고이월 필요
11	치수안전과	서울시 치수 사업관리 용역	1,000	485	30	49%	'26년 5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사고이월 필요
12	치수안전과	빗물펌프장 노후 모터펌프 성능진단	264	233	32	88%	용역 준공기한('26. 9.) 미도래에 따른 사고이월 필요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 현액	사고 이월액	집행 잔액	이월률	사 유
		용역					
13	치수안전과	증량천(노원구) 경춘철교 교량 분수 전망대 조성	1,500	940	-	63%	용역 준공기한('26. 6.) 미도래에 따른 사고이월
14	치수안전과	증량천(동대문구) 하천 시설물 정비	120	120	-	100%	사업계획 변경 및 동절기 시공 시 품질저하 우려로 금년도 내 사업추진 불가하여 예산잔액 이월추진

- ‘안양천(금천구) 수변활력거점 조성’ 외 2개 사업은 서울의 물길과 지역자산을 연계하여 문화와 활력이 넘치는 수세권으로 재편하기 위해 수변감성도시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사업별 사고이월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표] 사고이월 30% 이상 사업 현황(수변활력거점 조성 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집행잔액	이월률	비고
	합 계	3,852	6,028	3	72.1%	
1	안양천(금천구) 수변활력거점 조성	2,655	1,000	1	38%	
2	안양천(양천구) 수변활력거점 조성	700	634	-	91%	
3	우리동네 수변 예술놀이터 조성	497	4,394	2	88%	

- 먼저, ‘안양천(금천구) 수변활력거점 조성’ 사업은 안양천과 금천구청역, 금천한내교를 연계하는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예산현액 26억 55만원 중 38%인 10억원을 사고이월함.
- 이는 사업구간 중 금천한내교 일대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의 하천점용허가 협의 과정에서 시설물의 유수장애 및 안정성 보완 요청¹⁶⁾ 등으로 공사가 지연됨에 따른 것임.

16) (주요 이견사항) 액티브놀이기마당 내 바닥놀이터의 유수장애 유무 및 제방부 어린이 놀이터, 진입경사로의 안전성

- 다음으로, ‘안양천(양천구) 수변활력거점 조성’ 사업은 안양천 둔치 공간을 활용하여 안양천 뚝방길과 연계한 수변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예산현액 7억원 중 91%인 6억 34백만원을 사고이월함.
- 동 사업 역시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하천점용허가 협의 과정에서 계획 수정 및 보완 요구 등¹⁷⁾으로 행정절차가 지연되었고, ’25.12월이 되어서야 공사가 발주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한 것임.
- 마지막으로, ‘광진구 우리동네 수변 예술놀이터 조성’ 사업은 중곡빛물펌프장 상부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 친화형 전망 및 문화공간(북카페, 휴게 공간 등)을 증축하려는 것으로, 예산현액 49억 67백만원 중 88%인 43억 94백만원을 사고이월함.
- 이는 사업대상지인 중곡빛물펌프장에 선행하여 추진 중이던 증설 계획으로 인해 본 사업의 설계 및 공사 추진계획이 지연되어 오다가,
- ’25.4월 인근부지 매입을 통해 펌프장을 증설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본 사업의 설계용역이 ’25.12월이 되어서야 준공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공사비를 사고이월한 것임.
- 동 사업들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간과 연계사업의 추진 상황

검토 필요

17) (주요 이견사항) 건축물 및 데크 통합하여 하천점용허가 재신청 요구

및 일정 등 사전에 사업 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 사용의 비효율성을 낳았다고 보이는바,

- 추후 사업 추진 시에는 사업장애요인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우이천 교각경관 조명시설 설치’ 외 1개 사업의 사업별 사고이월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표] '25년 추경 편성된 사업 중 사고이월 30% 이상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집행잔액	이월률	비고
	합 계	550	527	23	72.1%	
1	우이천 교각경관 조명시설 설치	250	250	-	100%	
2	수변체험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300	277	23	92%	

- 먼저, ‘우이천 교각경관 조명시설 설치’ 사업은 우이천 수변 활력거점과 경관 연계성 강화를 위해 우이천 우이교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예산현액 2억 5천만원 전액을 사고이월함.
- 동 사업은 '25년 6월 추경예산으로 편성·추진된 것으로 좋은빛심의, 구조 안전성 용역 발주 검토 등의 사전절차가 지연되면서 연내 공사 착공이 어려워 사고이월한 것임.
- 다음으로, ‘수변체험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은 시민의 수변 접근성과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본격적인 체험공간의 조성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예산현액 3억원 중 92%

인 2억 27백만원을 사고이월함.

- 동 사업 역시 '25년 6월 추경예산으로 편성·추진된 것으로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용역발주심의 등의 사전절차가 지연되면서 용역계약이 '25.12월에야 이루어짐에 따라 연내 공사 착공이 어려워 사고이월한 것임.
 - 위 사업들은 추경 예산 편성 시 사전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예산을 편성한 결과 시급성을 살리지 못하고 이와 같은 예산 사용의 비효율을 초래했다고 사료되는바,
 -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경 예산은 그 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절차 및 예산집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현실적인 공정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성내천(송파구) 유출지하수 관로 정비공사’는 성내천 내 유지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노후·파손된 유출지하수 관로¹⁸⁾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예산현액 10억 5천만원 중 72%인 7억 58백만원을 사고이월함.
- 이는 다수의 지하매설물(통신관, 가스관 등)로 인한 굴착 공법의 검토와 동절기 도로굴착통제('25.11.24.~'26.2.28.) 등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예산을 사고이월한 것임.

18) (유출지하수관로 현황)

- 유 출 량 : 1,707톤/일
- 매설년도 : 1995년
- 규 모 : D315mm, L=1,200m(성내천 ~ 마천역)
- 사용현황 : (여름) 성내천 물놀이장 용수공급, (평시) 하천 유지용수 공급

- 이처럼 사전 조사 및 공법 검토가 미흡하고 동절기 굴착 통제라는 예측 가능한 공기 제한 변수마저 세밀하게 고려하지 못해 대규모 사고이월을 야기한 것은 문제라 할 것인바,
 - 향후에는 계획 단계부터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기술적 대안 검토를 조기에 완료하는 한편, 동절기 통제 기간을 차감한 실질적 절대공기를 정밀하게 산정함으로써 공기 부족에 따른 관행적 사고이월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빗물펌프장 노후 모터펌프 성능진단 용역’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 모터펌프의 안정성, 내구성, 사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수방 대응능력을 제고하려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64백만원 중 88%인 2억 33백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음.
- 동 사업은 총 87대의 노후 모터펌프([표] 참조)에 대한 기술진단을 통해 집중호우 시 배수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설비 노후화에 따른 수해 위험을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되었음.

[표] 자치구별 빗물펌프장 모터펌프 내용연수 경과 내역

자치구	빗물펌프장	내구연한 경과 모터펌프 수
합 계		87대
용산구	한남 빗물펌프장	1대
성동구	독섬 빗물펌프장 외 2	8대
동대문구	신답 빗물펌프장 외 6	21대
중랑구	면목 빗물펌프장	6대
성북구	석관 빗물펌프장 외 1	7대
강북구	송천 빗물펌프장 외 2	3대
노원구	공릉 빗물펌프장	4대

마포구	마포 빗물펌프장 외 1	5대
강서구	염창2 빗물펌프장	2대
구로구	구로2 빗물펌프장 외 2	7대
금천구	독산 빗물펌프장 외 3	14대
서초구	반포 빗물펌프장	2대
송파구	잠실 빗물펌프장 외 2	4대
강동구	천호 빗물펌프장	3대

- 그러나 해당 사업은 사업 추진 취지와는 다르게 '25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같은 해 6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되었으며, 이후 수방기간(5.15.~10.15.) 중 빗물펌프장의 가동 대기 및 집중호우 대응 필요성으로 인해 용역 시행에 제약이 있어,
 - 같은 해 12월에서야 용역 계약이 체결되었고 준공기한이 '26.9월로 예정됨에 따라 회계연도 내 집행을 위한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 사업비 대부분을 사고이월한 것임.
 - 동 사고이월은 시민 안전 및 수해 예방과 직결되는 사업임에도 서울시가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에 기인하는바,
 - 향후 재난 예방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 집행 가능한 기간과 계절적 제약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난 발생 전 적기에 대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 **‘중랑천(노원구) 경춘철교 교량 분수 전망대 조성’**은 중랑천에 위치한 경춘철교에 분수대 및 전망 쉼터 등을 조성하여 주

민들에게 수변 친수 공간을 제공하려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5억원 중 63%인 9억 4천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음.

- 동 사업은 '24.6월부터 추진된 장기계속공사로서 '25.6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1차분 공사가 '25.12.23일 완료되었고 2차분 공사는 '26.1.23일부터 '26.6.30일까지로 계획됨에 따라 당해 연도 내 집행되지 못한 2차분 공사비를 사고이월한 것임.



[그림] 경춘철교 위치도 및 현장 사진

- 이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별 공정 계획상 당해 연도 집행될 것이 명백한 공사비만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했

어야 함에도,

-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무리하게 전액 편성하여 결과적으로 상당 규모의 사고이월을 발생시켰으므로, 예산 편성 당시 공기 산정에 따른 집행 가능성 검토가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같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저해하고 예산의 적기 집행을 가로막는 관행적 사고이월은 지양되어야 할 것인바, 실제 공정 일정을 고려한 자원 배분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것임.
- ‘중랑천(동대문구) 하천 시설물 정비’는 중랑천 내 노후 시설을 정비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려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2천만원 전액을 사고이월 하였음.
- 동 사업은 '25.6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된 사업으로 수방기간(5.15.~10.15.) 종료 후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당초 사업 내용에 포함된 막구조물 철거 및 신설과 관련하여 한강유역환경청의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지 못함에 따라 '25.12월 사업계획을 노후 체육시설 바닥 재포장으로 변경하였고,
- 그 결과 동절기 공사 시행 시 품질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당해 연도 내 예산집행이 불가능하여 사업비 전액을 사고이월한 것임.

[표] '중랑천(동대문구) 하천 시설물 정비' 사업 변경 내역

구 분	당 초	변 경
준공일자	- '25. 12월	- '26. 3월
사업내용	- 기존 막구조 교체 및 신설 - 휴게공간 바닥 재포장(보도블록)	- 노후 체육시설 재포장(체조교실, 농구장 등) - 휴게공간 바닥 재포장(보도블록)
점용허가	- 허가불가	- 허가대상 아님

- 이는 중랑천의 경우 「하천법」 제7조¹⁹⁾에 따른 국가하천에 해당하여, 하천구역 내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은 같은 법 제33조²⁰⁾에 의한 하천점용허가 등의 사전절차 이행이 필수적임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 상위법령에 따른 규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예산편성에 앞서

19) 「하천법」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①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한다.

②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1. 유역면적 합계가 2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하천
2.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3. 유역면적 합계가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서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하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
 - 가.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貫流)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을지나는 하천
 - 나. 다목적댐, 하구둑 등 저수량 50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 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
 - 다.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문화유산보호구역 및 자연유산보호구역, 생태·습지 보호지역을 관류하는 하천
 - 라. 삭제 <2018. 8. 14.>
4. 범람으로 인한 피해, 하천시설 또는 하천공작물의 안전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

20) 「하천법」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5.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증함으로써, 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이 관계 법령상 제약으로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그림] 중랑천(동대문구) 하천 시설물 정비 위치도 및 현황사진

나. 도시개발특별회계

1) 세입결산

세입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 액(C)	미수납액 (A)-(B)-(C)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B/A)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2025	21,598	21,598	15,598	15,598	-	-	-	-	100%
2024	9,966	9,966	8,531	8,531	-	-	-	-	100%
2023	15,000	16,300	16,300	16,300	-	-	-	-	100%

가) 개요

- 예산현액 215억 98백만원 대비 100%인 215억 98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15억 98백만원을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세출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이체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25	116,627	105,856	-	-	-	-	222,484	98,630	96,216	45,942	50,274	4,501	23,136 (10.4%)
2024	75,508	4,946	-	-	-	-	80,454	33,519	41,394	30,124	11,270	143,670	5,397 (6.7%)
2023	45,971	9,549	-	-	-	-	55,521	46,219	4,946	-	4,946	-	4,354 (9.4%)

가) 개요

- 예산액 1,166억 27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058억 56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224억 84백만원으로, 이 중 44.3%인 986억 3천만 원은 지출하고 43.2%인 962억 16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

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4%인 231억 36백만원이 발생되었음.

나) 집행잔액(불용액)(결산서 p.58~59)

- 도시개발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2,224억 84백만원 대비 10.4%인 231억 36백만원이며, 불용률 30%(불용액 3억원 이상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은 ‘신림재정비 촉진지구 내 저류조 설치’ 등 3건(아래 [표] 참고)에 해당함.

[표] 불용률 30%이상 또는 불용액 3억원 이상 사업 현황(도시개발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과)	사 업 명	예 산 내 역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내역	
					불용액	비율(%)
1	차수안전과	신림재정비 촉진지구 내 저류조 설치	7,000	-	1,402	20%
2	차수안전과	도림천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	76,078	24,681	20,000	26.3%
3	차수안전과	도림천(관악구) 단면확장 사업	3,318	1,760	1,558	46.9%

- ‘신림재정비 촉진지구 내 저류조 설치’ 사업은 우수유출저감 시설 설치를 통해 우수유출로 인한 하수도의 홍수 부담을 경감시켜 수해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예산현액 70억원 중 20%인 14억 2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이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인 '24.12월 건설기술심의회소위원회 심의²¹⁾에서 저류조 유출부 위치와 관련하여 신림2구역 조합과의 공문서 협의 완료 조건이 부여됨에 따라, 서울시가 '25.1월부터 4월까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사유재산권 문제 등

21) 제309차 건설기술심의회소위원회('24.12.24.) 심의 결과(조건부채택)

- ‘유출부 위치에 대한 조합과의 공문서 협의 완료’ 조건 부여

으로 의견수렴이 '26.6월(예정)로 지연²²⁾ 되면서,

- 당초 '25.5월 준공 예정이었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기간을 '26.6월까지 13개월 연장하게 되면서 후속 절차인 특정공법심의, 지하안전평가 등이 순차적으로 지연되어, 당해 연도 내 계획된 시설공사비 등의 실질적인 원인행위가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집행잔액을 불용 처리한 것임.
- 동 사업은 상습 침수지역인 관악구 신림동 일대의 저류 용량을 대폭 확대(36,750㎥→54,600㎥)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급성이 높은 사업임에도,
-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된 것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서울시의 의지가 부족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예산편성 전부터 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이와 같이 표류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22) ○ 신림2구역 조합 관련 주요 협의일자 및 결과

- ① '25. 2.25. 15:00: 저류조 유출부 노선 최종(안) 설명 및 공유
(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등이 얽혀있어 대위원회·총회 의결을 받아야 유출부 노선 결정가능, 단지와 저류조 이격거리 확보 요청
- ② '25. 3.11. 15:00
(市) 저류조 기본설계 내용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예정, 조합·구청 부서 협조 요청
- ③ '25. 4.21. 15:30
(市) 유출부 위치 협의를 완료하기 위한 신림2구역 조합 협조 필요
(조합) 총회의결 전, 저류조 사업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요청 → '25. 6.27. 설명회 개최 完
- ④ '25.12.11. 14:00
(市)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26. 2. 내에 총회 개최 요청
(조합) 유출관로 지상권 설정 총회 안건 수용, 區 도시계획과(인허가권자)와 협의 중인 안건 정리후 정기 총회 개최 예정 → '26. 6. 조합총회 예정

[표] 신림재정비 촉진지구 내 저류조 설치 용역 개요 및 위치도

○ 용역명 : 신림재정비촉진지구내 저류조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용역기간 : 2023. 6. 26.~2025. 5. 25. ○ 용역비 : 999,330천원 ○ 용역사 : (주)한국종합기술 외 2개사 ○ 위치 및 용량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79-4 일원 - 우수저류시설 용량(V) : 54,600m³ - 우수저류시설 조성 대상지면적 : 7,300m² (현황측량조사 면적 : 1km² 이내)	
--	--

- ‘도림천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 사업은 도림천 보라매공원
에서 한강까지 지하 빗물배수시설 (L=4.54km, D=10.4~12.0m, 저
류량 40만톤)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예산현액 760억 78백만원
중 26.3%인 200억원을 불용하였음.
- 동 사업은 '22.8.10일 서울시가 발표한 ‘집중호우로부터 안전한
서울’²³⁾ 수방대책²⁴⁾에 따라 방재성능 목표를 기존 30년 빈도
(95mm/h)에서 50년 빈도(100mm/h) 수준으로 상향하기 위해 추진
중인 6개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설치 1단계 사업([표] 참조) 중
하나로,

23) 서울시장 입장문_‘집중호우로부터 안전한 서울시를 만들겠습니다.’ (‘22.8.10.)

24) 30년빈도(95mm/h) → 50년빈도(100mm/h), (강남 100년빈도 110mm/h)

[표] 집중호우로부터 안전한 서울 수방대책 발표 사업지

단 계	사 업 장 소
1단계	① 강남역 일대, ② 광화문 일대, ③ 도림천 일대
2단계	④ 사당동 일대, ⑤ 강동구 일대, ⑥ 용산구 일대

- '22.8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²⁵⁾받은 이후, 환경부로 부터 국고보조금 25% 지원 가내시가 확정되어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국·시비 매칭 사업임.
- 이에 '25년도는 국비 가내시액 50억원과 시비 150억원을 포함 하여 총 200억원의 예산을 사업대상지 내 사유지 및 국·공유 지 등에 대한 토지보상비를 집행할 계획으로 편성하였고,
- 토지수용에 앞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²⁶⁾ 등에 따

25) 2022년도 제2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면제사업 선정 결과 통보(환경부)_기획재정부 (2022. 8.25.)

2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 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 인정을 받아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사업인정의 신청)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이하 “사업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인정신청서(이하 “사업인정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시행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업 인정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예정지

4. 사업인정을 신청하는 사유

② 사업인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3. 사업예정지 안에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에 관한 조서·도면 및 해당 토지등의 관리자의 의견서

4. 사업예정지 안에 있는 토지의 이용이 다른 법령에 따라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시행에 관

라 선행되어야 할 각종 영향평가(재해, 소규모환경, 지하안전 등)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의 절차를 당해 연도 추진하였으나,

- 재해영향평가 협의 완료는 '25.12.18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26.1.8일,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완료는 '26.3.16일에서야 각각 이루어지는 등 상당 기간이 지연²⁷⁾됨.
- 그 결과, 당해 연도 내 토지보상비 집행이 불가하여 국비 50억 원을 교부받지 않았으며, 이와 연동된 시비 매칭분 150억원 역시 집행이 불가능해져 '25년도 편성예산 200억원 전액을 불용한 것임.
- 이처럼 주요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당초 '28.12월로 계획되었던 사업 준공 목표도 '30.1월로 연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하여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5.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면허 또는 인가, 그 밖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6.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의 협의내용을 적은 서류(협의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토지 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물건 또는 권리가 소재하는 토지의 세목을 말한다)을 적은 서류
8. 해당 공익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등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사업시행자의 의견서

27) □ 추진현황

- '25.12.18. : 재해영향평가 협의 완료(국립재난안전연구원)
- '26.01.08. :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6.01.27. : (보라매공원)문화재 표본조사 협의 완료(국가유산청)
- '26.03.16. :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완료(국토관리청)
- '26.03. :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관련기관(부서) 협의기[33개 관련기관(부서)]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열람기간: '26.3.20.~4.2.)
사업인정 이해관계자 의견청취(열람기간: '26.3.27.~4.9.)
- '26.05.13. : 사업인정 협의(중앙토지수용위원회)

□ 향후계획

- '26.06. : 실시계획인가 고시
- '26.06.~ : 본공사,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

- 서울시 귀책 사유로 국비를 미교부 받았다는 점에서, 향후 중앙정부와의 예산 협의 과정에서 서울시의 사업 추진 능력에 대한 신뢰도가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서울시는 향후 국비 신청에 앞서 주요 선행 행정절차의 완료 가능 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관성적인 예산 요구를 지양해야 할 것임.



[그림] 도림천 일대 빗물배수시설 사업 위치도

- ‘도림천(관악구) 단면확장 사업’은 도림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도림천 상류부 단면부족 구간의 통수능 증대와 치수안정성 확보를 위해 하천 단면적을 확장하려는 것으로, 예산현액 33억 18백만원 중 46.9%인 15억 58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동 사업은 관악구 별빛내린천 동방1교부터 승리교 구간(L=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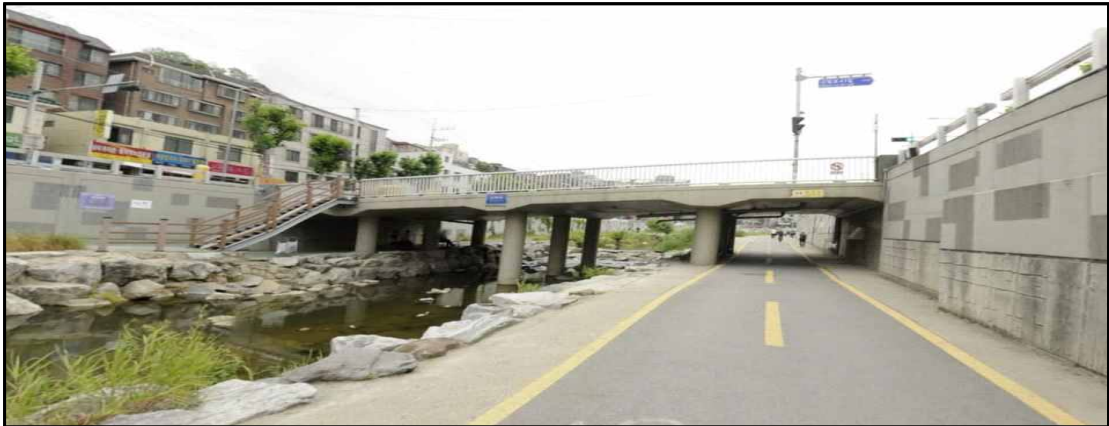
km)까지 교량 재가설 2개소, 낙차보 철거 8개소, 홍수방어벽 설치, 도로고 조정 등을 시행하는 장기계속공사로, '22.10월 착공하여 '25.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 사업임.

- 불용액 발생 사유는 '24.6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가로 예산액 12억원²⁸⁾을 확보하였음에도, '25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를 긴밀히 연계·검토하지 못하고 사업비를 과다 편성함에 따라 대규모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 예산 편성 단계에서 기 확보예산에 따른 공정률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였다면 상당 규모의 재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비효율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으며,
- 특히 동 사업이 '25.6월 최종 준공되었음을 감안할 때 준공 이후 실시된 9월 추가경정예산에서 대규모 집행잔액을 감추경할 수 있었음도, 이를 타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예산 관리 측면에서 매우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됨.

28) '24.6월 추가경정예산 '도림천(관악구) 단면확장 사업'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본예산(A)	추경액(B)	최종예산액(A+B)
치수안전과	도림천(관악구) 단면확장	1,820	1,200	3,020



도림천 신본교 단면확장 전



도림천 신본교 단면확장 후

[그림] 도림천(관악구) 단면확장 사업

다) 예산전용

- 해당 없음.

라) 이체

- 해당 없음.

마) 예산변경 (결산서 p.80)

- 예산의 변경 사업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예산 변경사용 현황(도시개발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사 유
				감액	증액		
3건			5,080	278	278		
치수 안전과	오류천(구로구) 단면확장	401-01 시설비	2,295	228	-	2025-01-31	원활한 장기계속사업 추 진을 위한 예산변경(시 설비→감리비)
		401-02 감리비	205	-	228		
치수 안전과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사업	401-01 시설비	274	10	-	2025-12-03	감리비 증액에 따른 예 산 변경 사용
		401-02 감리비	46	-	10		
치수 안전과	도림천(관악구) 단면확장 사업	401-01 시설비	1,760	40	-	2025-04-07	도림천 단면확장 사업 감리비 추가 확보에 따 른 통계목 변경
		401-02 감리비	500	-	40		

- ‘오류천(구로구) 단면확장’ 사업은 통수능이 부족한 오류천의 단면적을 확보하여 수해를 예방하고 하천기능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동일 세부사업 내 시설비 22억 95백만원 중 2억 28백만원을 감리비로 변경하여 사용함.
- 동 사업의 경우는 당초 '25년도 본예산 편성 시 물순환안전국이 50억원의 예산을 예산담당관에 요구하였으나, 예산 확정 과정에서 서울시의 재원 배정 여건 등에 따라 절반인 25억원만 반영됨에 따라,
- 시설비는 공사구간 및 수량 조정을 통해 일부 감액이 가능했던 반면, 감리비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을 위한 연간 계약 성격상 공사 기간 대비 최소 상주 기술인력 배치가 불가피하여 부족한 감리비 2억 28백만원을 시설비에서 융통하여 사용한 것임.

- 이는 당초 예산 편성 단계에서 공사비 감액에 따른 감리비 소요를 유기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에는 공사 물량뿐만 아니라 감리기간, 배치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과목 간 편성의 정합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 참고로 동 사업은 '20년부터 추진된 장기계속공사로 '29.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연차별 최소 사업비 편성([표] 참조)으로 미시공 물량이 지속 순연·누적되고 있어 공기 장기화 및 추가 재정부담이 우려되는바, 보다 적극적인 재원 투입계획이 요구됨.

[표] '오류천(구로구) 단면확장' 관련 예산 요청액 대비 편성액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예산요청액	37,340	3,100	10,240	5,000	9,000	10,000
예산편성액	17,684	3,100	4,784	2,300	2,500	5,000

-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사업'은 녹번천의 복개구간을 복원하여 하천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도심 내 휴게공간을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려는 것으로, 동일 세부사업 내 시설비 2억 74백만원 중 1천만원을 감리비로 변경하여 사용함.

- 이는 복개구조물 철거 이후 하천 내 구조물 설치를 위한 가시설이 지하철 6호선과 인접(철도보호지구 30m 이내)하여 설치²⁹⁾

29)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이하 “노면전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1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되는 것으로 추진됨([그림] 참조)에 따라, 서울교통공사의 요청을 반영하여 지하철 안전성 확보를 위한 3D 수치해석(시뮬레이션) 과업이 추가³⁰⁾되어 부족해진 감리비를 시설비에서 융통한 것으로,



[그림] 녹변천 복개철거 및 복원사업 위치도 및 조감도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건축물의 신축·개축(改築)·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0)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17조(추가업무비용) ① 제14조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추가업무로 본다.

1. ~ 10. (생략)

11. 수리모형실험 및 수치모델 실험 및 시뮬레이션

- 철도보호지구 내 공사 시행에 따른 안전성 검토를 보강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예산 변경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에는 관계기관 협의에 따른 추가 과업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임.

마)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바) 차년도 사고이월(결산서 p.167~168)

- 도시개발특별회계 차년도 사고이월은 15건(통계목별)에 502억 74백만원으로 총 예산현액 2,224억 84백만원 대비 22.6%에 해당됨.
- 이들 사고이월 사업 중 사고이월 금액이 예산현액의 30% 이상 되는 사업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표] 사고이월 30% 이상 사업 현황(도시개발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	사업명	예산 현액	사고 이월액	집행 잔액	이월률	사 유
1	치수 안전과	성내천 등 6개 하천기본계획 수립	432	432	-	100	환경영향평가 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 지연, 준공기한 연기에 따라 '26.3 준공예정으로 사고이월 필요
2	치수 안전과	봉천천(관악 구) 하천복원	180	63	54	34.9	용역 준공기한('26.7.) 미도래에 따른 사고이월 필요
3	치수 안전과	도림천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	76,078	31,397	20,000	41.2	준공기한 미도래(2026. 11. 13. 본공사(2차) 준공 예정)
4	치수 안전과	도림천 등 6개 하천기본계획 수립	700	300	-	42.8	하천기본계획 자문회의(2차) 일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하여 '26년 3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사고이월 필요

연번	부서	사업명	예산 현액	사고 이월액	집행 잔액	이월률	사 유
5	치수 안전과	개화육갑문 일대 내수침수 해소	3,314	1,645	9	49.6	사업 사전 절차(토지사용협의, 설계안전성 검토용역 등)지연 및 공종상 우천시 작업이 불가함에 따라 지연 불가피하여 사고이월 필요

- ‘성내천 등 6개 하천기본계획 수립’ 사업은 성내천 등 6개 지방하천([표] 참조)의 원활한 하천관리를 위해 「하천법」 제25조³¹⁾에 따라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예산현액 4억 32백만원 전액을 사고이월 하였음.

[표] ‘성내천 등 6개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 내역

하천명	하천 등급	위치		연장 (Km)	기본계획 수립일
		기점	종점		
계		지방하천 6개소		17.31	
성내천	지방	송파구 마천동	송파구 신천동 한강 합류점	7.71	2015.12.10.
감이천	지방	송파구 방이동	송파구 방이동 성내천 합류점	0.88	“
고덕천	지방	강동구 상일동	강동구 고덕동 한강 합류점	3.54	“
대사골천	지방	강동구 상일동	강동구 상일동 고덕천 합류점	0.45	“
구의발천	지방	은평구 진관동	은평구 진관동 창릉천 합류점	3.43	미 수립 (’21.8. 지방하천 지정)
봉원천	지방	마포구 노고산동	마포구 신정동 한강 합류점	1.30	2014. 4. 3.

- 이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³²⁾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

31) 「하천법」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하천의 치수·이수·수생태환경 및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주민친화적 활용, 자연친화적 관리·보전 및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취약성 대응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지역을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에 대해서는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32) 「환경영향평가법」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 8. (생략)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계획

10. ~ 18. (생략)

의 결과를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나,

- '25.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³³⁾로 인해 서울시와 한강유역환경청 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26.1월로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후속 절차 이행을 위한 과업 기간이 부족하여 편성예산 전액을 사고이월한 것임.
 - 동 사고이월은 예측 불가능한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그 사유가 인정된다 하겠으나, 하천기본계획은 하천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 의무 계획이라는 점에서 장기간 지연될 경우 하천관리 기준의 시의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바,
 - 서울시는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반영,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등 잔여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26년 하반기로 계획된 하천기본계획 수립·고시가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도림천 등 6개 하천기본계획 수립' 사업은 도림천 등 6개 지방하천([표] 참조)의 원활한 하천관리를 위해 「하천법」 제25조에 따라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예

33)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2025.9.26.)

날짜 : 2025년 9월 26일~현재
시간 : 오후 8시 15분경 (KST, UTC+9)
위치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
원인 : 무정전전원장치(UPS)실 리튬 배터리 폭발로 추정
결과 :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등 96여개 정부 온라인 서비스 중단
화재 발생 구역 서버 전원 차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가동
정부 핵심 디지털 인프라의 안전성 및 재해복구 능력에 대한 논란 가중
행정 장애 담당 공무원 사망

산현액 7억원 중 42.8%인 3억원을 사고이월 하였음.

[표] ‘도림천 등 6개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 내역

하천명	하천 등급	위치		연장 (Km)	계획빈도 (년)
		기점	종점		
도림천	지방	관악구 신림동 808-126	영등포구 문래동 안양천 합류점	11.00	100
도림천2	지방	관악구 신림동 73-5	관악구 신림동 808-413	1.21	80
대방천	지방	동작구 상도동 34-43	영등포구 도림동 도림천 합류점	5.47	80
봉천천	지방	관악구 봉천천 239-15	관악구 신림동 도림천 합류점	5.02	80
오류천	지방	구로구 궁동 252	구로구 개봉동 목감천 합류점	4.93	80
시흥천	지방	금천구 시흥동 1016-16	금천구 시흥동 안양천 합류	2.78	80

- 동 사고이월은 하천 치수계획 수립 시 설계홍수량 산정에 반영되어야 할 주요 관련 계획 협의가 인근 연관 사업들³⁴⁾의 지연으로 인해 홍수량 결정을 위한 1차 자문회의가 당초 '25.3월에서 '25.8월로 5개월 연기 되었고,
- 연이어 서울시와 한강유역환경청과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25.11월에서 '26.2월로 지연되면서 2차 자문회의 또한 '26.5월까지 연기됨에 따라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3억원을 사고이월한 것임.
- 이는 유관 계획의 지연 및 대외적 요인이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으나, 본 사업 역시 「하천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 의무 계획으로서 도심지 치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최상위 지침이 되는바,

34) ‘신림2 재정비촉진지구’ : 상류부 우수저류조 계획에 따른 도림천2지류 홍수량 검토
‘도림천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 : 유역분담량에 대한 지역수자원위원회 심의

- 이월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여 준공 목표 기한³⁵⁾인 '26.8월 내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가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개화육갑문 일대 내수침수 해소’ 사업은 집중호우로 인한 한강 수위 상승에 따른 개화육갑문 일대의 내수침수를 해소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예산현액 33억 14백만원 중 49.6%인 16억 45백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음.
- 동 사업은 별도의 사전절차 지연은 없었으나, 공사 착수 이후 현장 여건 및 후속공정 조정 등으로 총 4차례 준공기한이 연기되면서 당초 '25.12.26일이었던 준공기한이 '26.6.30일로 지연됨에 따라 당해연도 내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하여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임.
- 지연 사유를 살펴보면 ① 사유지 협의 및 적치물 처리 6개월, ② 우천 및 동절기 기상 여건에 따른 공정 지연 5개월, ③ 선행 토목공사 지연에 따른 보도 파손 복구 1개월, ④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한 차단시설 추가 설치 1개월 등으로 인해 준공기한이 수차례 반복 연기³⁶⁾된 것으로,

35) ‘도림천 등 6개 하천기본계획 수립’ 사업

□ 향후계획

- '26.05. : 2차 자문회의(하천기본계획 전반)
- '26.06. : 주민설명회 실시
- '26.07. :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하천 및 하천구역 고시
- '26.08. : 용역 준공

36) ‘개화육갑문 일대 내수침수 해소 사업’ 준공기한 연기 내역

- 이는, 예상 가능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지 못한 것에 기인하는바, 내수침수 예방을 위해 시급히 추진되는 사업이 본래의 방재 기능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그림] 개화육갑문 일대 내수침수 해소 사업 위치도 및 현황

구 분	총 차	1차	2차	변경사유
최 초	'24.12.27. ~'25.12.26	'24.12.27. ~'25.5.30	'25.6.2. ~'25.12.26.	
변 경	'24.12.27. ~'25.12.26.	'24.12.27. ~'25.11.15.	'25.6.2. ~'25.12.26.	개인사유부지 사용허가 협의 및 방치물품 처리기간 필요
변 경	'24.12.27. ~'26.4.30.	'24.12.27. ~'25.12.20.	'25.6.2. ~'26.4.30.	우천으로 인한 작업일수 부족 레미콘 타설 품질 확보를 위한 공기연장
변 경	'24.12.27. ~'26.5.31.		'25.6.2. ~'26.5.31.	공정상 절대공기 부족
변 경	'24.12.27. ~'26.6.30.		'25.6.2. ~'26.6.30.	약취차단시설 설치

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 세 입 결 산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 산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불납결손 액(C)	미수납액 (A)-(B)-(C)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B/A)
							결손처분	다음년도 이 월 액	
2025	29,383	29,453	28,872	28,872	-	-	-	-	100.0
2024	32,101	32,258	31,866	31,866	-	-	-	-	100.0
2023	36,612	37,339	34,341	34,341	-	-	-	-	100.0

가) 개 요

- 금회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94억 53백만원으로 288억 72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 중 288억 72백만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100% 수납됨.

나) 세수추계(결산서 p.26-27)

- 금회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의 경우 세입예산액 대비 98.0%로 총 5억 81백만원의 차가 발생하였음.

[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가 과다한 항목들

(단위: 백만원)

편성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차액 (b)-(a)	사 유
경상적 제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67	14	14	-53	보조금 수입 감소로 예금 이자수입 감소
보조금					
기금	26,553	26,030	26,030	-523	국비(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 예산 부족에 따른 미교부액(246,086천원) 발생* 및 '25년 징수액이 예측 대비 감소하여 교부금(징수액의 1.7%) 감소

※ '25년도 미교부액은 '26년 1월에 수령완료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고보조금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예산액 265억 53백만원 대비 징수결정액 이 5억 23백만원 감소한 260억 3천만원으로, 감소사유는 한강수 계관리기금 감소로 인한 국비 수령액이 감소한 것임.

2) 세 출 결 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변경	전용	이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25	29,383	70	-	-	-	-	29,453	27,861	50	-	50	583	959 (3.3%)
2024	32,101	157	-	-	-	-	32,258	30,292	70	-	70	875	1,021 (3.2%)
2023	36,612	727	-	-	-	36,519	37,339	32,727	157	-	157	1,172	3,282 (8.7%)

가) 개 요

- 예산액 293억 83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7천만원을 합한 예산현 액은 294억 53백만원으로, 이 중 94.6%인 278억 61백만원은 지 출하고, 2.0%인 5억 83백만원은 보조금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예 산현액 대비 3.3%인 9억 59백만원이 발생되었음.

나) 집행잔액(불용액)(결산서 p.60~61)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의 불용률 30% 이상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예비비 1건으로 당해연도 내 예비비 사용 요인이 발생하지 않 아 불용된 것임.

[표] 불용률 30%이상 사업 현황(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내역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비율
1	물재생시설과	예비비(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68	-	268	100.0%

다) 예산전용(결산서 p.71)

- 예산 전용 사용은 1건에 1백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예산 전용사용 현황(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증감액		변경후 예산액	전용 일자
정책	단위	세부	목	세목		감	증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한강수질 개선 (한강수 질개선특 별회계)	잠실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50	△1	-	49	'25.12.29.
			일반운영 비	공공운영비	25	-	1	26	

- ‘잠실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광진정보도서관 오수 중계펌프장 오수배관이 파손됨에 따라 필요한 긴급 보수비용 (공공운영비)이 부족하여 동 사업의 시설비에서 1백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한 것임.

라) 이체·변경사용

- 이체없음.
- 예산 변경 사용은 1건에 6천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예산 변경사용 현황(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요구액		변경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합 계				510	60	△60	510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한강 수질개선	동행서울 친환경농장 가꾸기	사무관리비	250	60		310
			재료비	260		△60	200

- ‘동행서울 친환경농장 가꾸기’ 사업은 재료비 6천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는데, 이는 영농교재 제작 등 친환경농장 가꾸기 사업에 필요한 사무비용이 부족하여 이를 충당하기 위해 예산을 변경사용한 것임.

마)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바) 차년도 사고이월(결산서 p.180)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차년도 사고이월 규모는 총 5천만원으로 총 예산현액 294억 53백만원 대비 0.2%에 해당되고, 세부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사고이월 현황(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 현액	사고 이월액	집행 잔액	이월률 (%)	사 유
1	물재생 시설과	한강분류 쓰레기 처리사업(한강수계기금)	608	50	0	8	- 한강공원 내 발생 폐기물(소각) 위탁처리 용역방침 수립과 계약 절차 이행 등에 약 3개월이 소요 - 폐기물 처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25년 4월부터 '26년 2월 까지로 정하여 사업진행 -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준공기한('26.2월 말) 미도래

라.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기금운용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수입								지출						
	계	전년도 이월액	전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이자 수입	예치금 회수	예탁금 원금 회수	기타	계	고유목적 사업비 등	예치금	예탁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	다음연도 이월액
2025	95,431	-	-	-	3,307	92,124	-	-	95,431	-	76,221	-	-	19,210	-
2024	92,124	-	15,601	-	3,291	73,231	-	-	92,124	-	92,124	-	-	-	-
2023	73,231	-	20,000	-	2,938	50,293	-	-	73,231	-	73,231	-	-	-	-
2022	50,293	-	49,646	-	647	-	-	-	50,293	-	50,293	-	-	-	-
2021					해	당	없	음							

* 관련 용어

수입	예치금 회수	전년도말 예치금 잔액
	보조금	중앙부처에서 기금으로 교부된 금액 (소방방재청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피해복구 국비분담금)
	이자 수입	시금고 여유자금 운용 이자수입(공공예금, 정기예금 등) 및 재정투융자기금 예 탁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이전년도말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모든 자금을 당해연도 회계로 이전하는 금액
	예탁금 원금회수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한 여유자금 중 상환기간이 도래하여 회수하는 금액
	기타	기타잡수입(과년도 회계 정산 반납금)
지출	고유목적 사업비	기금설치조례의 목적사업으로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출된 사업비
	예치금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양한 형태(1,3,6,12개월)로 금융기관(시금고)에 예치한 모든 금액
	예탁금	기금의 여유자금을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는 계정간 이동 자금
	예수금원리금 상환	타 회계 및 기금(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 가져온 자금의 상환
	기타	위원회 운영 기본경비 등

가) 개 요

- 물순환안전국 소관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이하 “회전기금”)’은 「지방공기업법」 제39조에 따라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장래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을 적립하기 위한 것임.

나) 기금 총괄(결산서 p.91)

- 회전기금의 당해연도말 조성액³⁷⁾은 전년도말 조성액 921억 24백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³⁸⁾ 33억 7백만원 및 사용액 △192억 1천만원을 합산한 762억 21백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921억 24백만원)보다 △159억 3백만원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

[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총괄

(단위: 백만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E=A+B)
	(A)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회전기금	92,124	△15,903	3,307	19,210	76,221

- 이는 2025회계연도에 국고보조금 시비 매칭에 따른 재원 부족으로 특별회계 전입금 수입이 미편성³⁹⁾된 것과 ‘중량물재생센터 현대화공사 2-1단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92억 1천만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하였기 때문임.

37) 당해연도말 조성액 = 시금고 예치금 +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38) 당해연도 조성액 = 자치단체 출연금+이자수입+기타 (예탁금상환, 예치금회수 제외)

39) '24년 156억 1백만원 → '25년 0원

다) 기금 수입 결산(결산서 p.99)

-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수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수입계획현액 951억 24백만원중 100.3%에 해당하는 954억 31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음.
- 징수결정액(수납액)이 수입계획현액보다 증가한 것은 시금고의 이자수입이 계획(30억원) 대비 3억 7백만원이 증가하여 수납(33억 7백만원)됨에 따른 것임.

[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수입결산

(단위: 백만원)

수입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수입계획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당초	수정 (가)	(나)	(다)=(가)+(나)	(라)	(마)
94,533	95,431	-	95,431	95,431	95,431

라) 기금 지출 결산(결산서 p.100)

-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지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지출계획현액 945억 32백만원에서 예치금으로 762억 21백만원, 기타지출로 192억 1천만원을 지출함.

[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지출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지출계획액		전년도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당초	수정 (가)	(나)	(다)=(가)+(나)	(라)	(마)
계	94,533	95,431	-	95,431	95,431	-
예치금	94,533	76,221	-	76,221	76,221	
기타지출	-	19,210	-	19,210	19,210	

- 이 중 기타지출 192억 1천만원은 '25년도 본예산 편성 시 일부 사업비만 반영되어 예산 미확보 시 공사 중단이 불가피했던 '증량물재생센터(2-1단계) 현대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을 편성한 것에 기인한 것임.

[붙임]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조치계획

연번	시정 권고사항	내용	조치계획	소관실국 (부서명)
40	수방대책 사업의 예산 적기 지출 필요	수방대책 사업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기반사업인 만큼, 사업 준비도와 연내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함.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사전절차의 진행 수준에 따라 단계별 예산편성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고, 실질적인 사업 착수 가능성이 확보된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 (신림 재정비촉진지구) 연내 조합 협의 완료 및 설계 준공('26.12.26.)으로 이월액 1,098백만원 전액 집행 예정 - (종로 청소년센터) 연내 현상설계공모 이행 후 당선자와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하며 이월액 1,000백만원 전액 계약 예정 - (이수과천 복합터널 건설) 사전 행정절차 및 실질적인 사업 추진 공정을 고려한 예산 편성으로 예산 미집행 최소화, 연내 이월액 3,000백만원 전액 집행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40. 수방대책 사업의 예산 적기 지출 필요

[수방대책 사업 / 물순환안전국]

가. 현황 및 문제점

2025회계연도 수방대책 사업 중 주요 저류시설 및 빗물배수 인프라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핵심 3개 사업에서 편성 예산이 전액 지출되지 못하고 상당 부분 이월되거나 불용된 것으로 확인됨. 이는 단순한 집행 지연을 넘어 사업 준비 단계와 예산 편성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2025회계연도 수방대책 주요 사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불용액
신림 재정비촉진지구 내 저류조 설치	7,000	0	1,098	4,500	1,402
종로 청소년센터 저류조 설치	1,000	0	1,000	0	0
이수-과천 복합터널 건설(빗물배수터널)	3,000	0	3,000	0	0
계	11,000	0	5,098	4,500	1,402

우선, 대상 사업들은 인허가, 관계기관 협의 등 주요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남. 당해연도 내 공사 착수와 실질적인 예산 집행이 불확실함에도 예산이 편성된 것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 추진 여건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임.

또한 사업별 관계기관 협의 지연 역시 사업 추진을 지체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신림 재정비촉진지구 내 저류조 설치 사업의 경

우 주민협의 지연으로 실시설계 착수가 늦어졌고, 종로청소년센터 저류조 설치 사업은 시설 기능 조정 및 부지 활용계획 변경으로 사업확정이 지연됨. 이수~과천 복합터널 건설 사업은 실시계획 승인 협의과정에서 서초구의 요구사항 검토로 인해 실시계획 승인이 지연, 보상비 집행이 순차적으로 지연된 것으로 나타남.

결국 3개 사업에서 110억원의 예산이 전액 지출되지 못하고 이월 또는 불용된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연도 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증 절차가 미흡하였음을 보여줌. 대규모 수방 인프라 사업의 특성상 사업 간 연계성과 종합적인 일정관리가 중요한 만큼, 보다 체계적인 통합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임.

나. 시정권고

수방대책 사업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기반사업인 만큼, 사업준비도와 연내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함.

우선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사전절차의 진행 수준에 따라 단계별 예산편성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고, 실질적인 사업 착수 가능성이 확보된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또한 광역사업 및 관계기관 협의가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담 협의체 운영과 일정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사업 지연 요인을 사전에 관리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예산편성 단계에서 당해연도 집행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사업별 추진 일정과 예산, 지연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함께 제고할 필요가 있음.

2025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의안번호 : 제3696호, 제3697호, 제3698호

다. 제출일자 : 2026. 5. 26.

라. 회부일자 : 2026. 5. 27.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 제1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에 대한 결산 및 예비지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3. 2025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예산현액(A)					세 입 수납액 (B)	세 출 지출액 (C)	세계잉여금(이월액)(B-C)		
계	당초 예산	추경 예산	간주 처리	이월 예산			계	차기 이월	순세계 잉여금
1,242,122	910,112	181,411	33,794	116,805	1,205,365	928,811	276,554	242,609	33,945

가. 세 입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미수납액 (B-C)	미수납액처리		징수율 (C/B)
					불납 결손액	미수금	
910,112	1,242,122	1,230,758	1,205,365	25,393	218	25,175	97.9%

나. 세 출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현액 (A)	집 행 액(B)			불용액 (A-B)	집행율 (B/A)
		계	지출액	이월액		
910,112	1,242,122	1,171,420	928,811	242,609	70,702	94.3%

* 예산현액 : 당해연도에 실제로 지출할 수 있는 세출금액
 = 세출예산(당초예산+추경예산+간주처리) + 전년도 이월액 + 증감액(전용, 변경사용 등)

4. 결산 개요

가. 세 입 (결산서 p.164~167)

- 2025회계연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하수도사업수익, 자본적수입으로 구성되며, 세입 예산현액 1조 2,421억 22백만원의 99.1%인 1조 2,307억 58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그 중 97.9%인 1조 2,053억 64백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음.
- 미수납액은 253억 93백만원으로, 그 중 2억 18백만원을 결손처분하고, 251억 75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단위: 백만원, %)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B)	실제 수납액 (C)	미수납액 (B-C)	미수납액처리		징수율 (C/B)
계	당초 예산	추경 예산	간주 처리	이월 예산				불납 결손액	미수금	
1,242,122	910,112	181,411	33,794	116,805	1,230,758	1,205,365	25,393	218	25,175	95.2

- 하수도사업수익(영업수익, 영업외수익) 징수결정액은 8,301억 4백만원임.
- 영업수익은 8,011억 53백만원임.
 - 사용료 수익 7,366억 69백만원
 - 기타영업수익 644억 84백만원
- 영업외수익은 289억 51백만원임.
 - 이자수익 105억 7백만원
 - 타회계전입금수익 154억 90백만원
 - 기타영업외수익 29억 54백만원

○ 자본적수입 징수결정액은 2,838억 48백만원임.

• 투자자산처분(하수도 회전기금 전입)	192억 10백만원
• 유형자산처분(토지)	0원
• 비유동부채수입(차입금)	0원
• 자본잉여금수입(시설분담금 등)	793억 96백만원
• 유보자금(순세계잉여금, 미수금)	1,852억 42백만원
• 기타자본적수입	0원

○ 이월자금(이월재원충당금)은 1,168억 5백만원임.

○ 세입 결산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관	항	세 항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징수율 (C/B)
	합	계	1,242,122	1,230,758	1,205,365	218	25,175	97.9
	하 수 도 사 업 수 익		841,136	830,105	814,995	-	15,109	98.2
	영 업 수 익		813,745	801,153	786,046	-	15,107	98.1
		사용료수익	756,418	736,669	723,049	-	13,620	93.5
		기타영업수익	57,327	64,484	62,997	-	1,487	97.7
	영 업 외 수 익		27,390	28,951	28,949	-	2	99.9
		이 자 수 익	9,321	10,507	10,507	-	-	100.0
		타회계전입금	15,490	15,490	15,489	-	-	100.0
		기타영업외수익	2,580	2,954	2,592		2	99.9
	자 본 적 수 입		284,181	283,848	273,564	218	10,066	96.4
		투자자산처분	19,210	19,210	19,210	-	-	100.0
		예탁금원금회수수입	19,210	19,210	19,210	-	-	100.0
		유형자산처분	-	-	-	-	-	-
		토지	-	-	-	-	-	-
		비유동부채수입	-	-	-	-	-	-
		기타비유동부채	-	-	-	-	-	-
		자본잉여금수입	86,013	79,396	79,091	-	305	99.2
		시설분담금	50,609	43,721	43,415	-	305	99.1
		타회계건설보조금	33,990	34,222	34,222	-	-	100.0
		공사부담금	1,414	1,453	1,453	-	-	100.0
		유보자금	178,958	185,241	175,264	218	9,760	94.6
		순세계잉여금	162,201	162,201	162,201	-	-	100.0
		미수금	16,757	23,040	13,062	218	9,760	56.7
		기타자본적수입	-	-	-	-	-	-
		기타자본적수입	-	-	-	-	-	-
		이월자금	116,805	116,805	116,805	-	-	100.0
		이월재원액	116,805	116,805	116,805	-	-	100.0

○ 전년도 대비 2025회계연도 과목별 세입결산 비교

(단위: 백만원)

관	항	세항	2025년도		2024년도		증감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합계	1,230,758	1,205,365	1,174,344	1,154,243	56,414	51,122
		하수도사업수익	830,105	814,995	849,867	835,585	△19,762	△20,590
		영업수익	801,153	786,046	808,121	793,939	△6,968	△7,893
		사용료수익	736,669	723,049	742,170	728,847	△5,501	△5,798
		기타영업수익	64,484	62,997	65,950	65,092	△1,466	△2,095
		영업외수익	28,951	28,949	41,746	41,646	12,795	12,697
		이자수익	10,507	10,507	10,866	10,866	△359	△359
		타회계전입금	15,490	15,489	27,703	27,703	△12,213	△12,214
		기타영업외수익	2,954	2,592	3,177	3,077	△223	△485
		자본적수입	283,848	273,564	191,795	185,976	92,053	87,588
		투자자산처분	19,210	19,210	-	-	19,210	19,210
		대여금회수수입	19,210	19,210	-	-	19,210	19,210
		유형자산처분	-	-	-	-	-	-
		토지	-	-	-	-	-	-
		비유동부채수입	-	-	-	-	-	-
		기타비유동부채	-	-	-	-	-	-
		자본잉여금수입	79,396	79,091	47,084	46,876	32,312	32,215
		시설분담금	43,721	43,415	45,228	45,020	△1,507	△1,605
		타회계건설보조금	34,222	34,222	1,267	1,267	32,955	32,955
		공사부담금	1,453	1,453	589	589	864	864
		유보자금	185,241	175,264	144,712	139,100	40,529	36,164
		순세계잉여금	162,201	162,201	92,022	92,022	70,179	70,179
		미수금	23,040	13,062	52,689	47,078	△29,649	△34,016
		이월재원수입	116,805	116,805	132,682	132,682	△15,877	△15,877
		현금이월재원액 (전년도사고이월액)	116,805	116,805	132,682	132,682	△15,877	△15,877

나. 세 출 (결산서 p.168~277)

- 2025회계연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당초 예산 9,101억 12백만원임.
- 집행액은 1조 1,714억 20백만원으로, 이중 9,288억 11백만원을 지출하고 2,426억 9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4.3%임.
- 집행잔액(이하 “불용액”)은 707억 2백만원임.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A)					집 행 액(B)			불용액 (A-B)	집행율 (B/A)
	계	예산액	추경 예산액	간주 처리	전년도 이월액	계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2025	1,242,122	910,112	181,411	33,794	116,805	1,171,420	928,811	242,609	70,702	94.3
2024	1,076,528	851,824	92,022	-	132,682	992,042	875,237	116,805	84,486	92.2
증감	165,594	58,288	89,389	33,794	△15,877	179,378	53,574	125,804	△13,784	2.1

☐ 예비비 (결산서 p.322~323)

- 해당사항 없음(미지출)

☐ 이월 (결산서 p.324~369)

- 「지방공기업법」 제30조에 따라 2025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총 100건, 2,426억 9백만원임.
- 건설개량이월¹⁾은 3건, 143억 18백만원
- 사고이월은 97건, 2,282억 91백만원

1) 「지방공기업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설·개량에 필요한 경비(자본예산)를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예산(1회 재이월 가능)으로 일반회계의 명시이월과 동일함

○ 건설개량이월 사업별 이월액 및 이월율(예산현액 대비)은 다음과 같음.

- 도림천 일대 외 2개소 배수개선사업(시설비) 48억 16백만원 (76.8%)
-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시설비) 94억 69백만원 (69.0%)
- 탄천물재생센터 민간투자사업(시설부대비) 33백만원 (83.8%)

○ 건설개량이월 원인 및 이월액 대비 비율

- 사전절차지연(2건) 142억 85백만원 (99.8%)
- 용역준공기한 미도래(1건) 33백만원 (0.2%)

○ 사고이월 사업별 이월액 및 이월률(예산현액 대비)은 다음과 같음.

-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1억 1백만원 (23.9%)
-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25억 30백만원 (22.6%)
- 하수박스 안전진단 등 용역 1억 8백만원 (10.1%)
-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외부 결산감사 21백만원 (36.0%)
- 하수도 악취 저감 추진 24억 50백만원 (40.9%)
- 하수도 정확도 개선 불탐구간 해소 4억48백만원 (22.7%)
- 노후불량 하수관로 종합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5억 18백만원 (15.4%)
- 고덕천 오수전용관로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2억 96백만원 (59.1%)
-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30년이상 원형하수관로
전수조사 및 기본계획 10억원 (33.3%)
- 하수시설물 긴급복구 및 정비 7억 83백만원 (7.8%)
- 노후 불량 하수맨홀 정비 6억 56백만원 (3.0%)
- 하수관로 수위계 설치 5억 2백만원 (32.7%)
- 양재2동 일원 빗물펌프장 신설 및 배수개선 35억 60백만원 (47.3%)
- 영등포, 신길펌프장주변 배수시설(관로) 개선 65억 92백만원 (78.5%)
- 영등포, 신길펌프장주변 배수시설(관로) 개선 1억 70백만원 (17.0%)
- 양재동 일원 빗물펌프장 증설 및 배수개선 40억 50백만원 (83.4%)

· 양재동 일원 빗물펌프장 증설 및 배수개선	2억 3백만원 (45.2%)
· 대림2 빗물펌프장 신증설 및 배수개선	10억 30백만원 (41.0%)
· 대림2 빗물펌프장 신증설 및 배수개선	1억 20백만원 (100.0%)
· 강남역 일대 배수개선사업(시설비)	35억 86백만원 (89.7%)
· 강남역 일대 배수개선사업(감리비)	40백만원 (100.0%)
· 성수동 둘레길 43 주변 외 1개소 하수관로 개량	2억 84백만원 (54.6%)
· 독서당로 46길 주변 외 1개소 하수관로 개량	3억 53백만원 (90.1%)
· 대동초 주변 외 1개소 사각형거 구조개선	17억 21백만원 (64.4%)
· 남부순환로 2753주변 사유지통과 하수관로 이설	3억 37백만원 (25.0%)
· 강남구청 주변 하수관로 개량	4억 40백만원 (88.0%)
·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749억 50백만원 (63.9%)
·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3억 6백만원 (35.4%)
· 중곡-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36억 32백만원 (28.8%)
· 면목3-5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79억 31백만원 (39.3%)
· 면목3-5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 34백만원 (9.3%)
· 일원-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70억 53백만원 (54.9%)
· 일원-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8억 97백만원 (60.1%)
· 이문-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22억 1백만원 (40.2%)
· 이문-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6억 56백만원 (71.9%)
· 방화1-8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7억 64백만원 (26.6%)
· 방화1-8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 33백만원 (70.7%)
· 장충-8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70백만원 (1.3%)
· 용산-22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52억 74백만원 (33.8%)
· 용산-22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8억 87백만원 (44.8%)
· 미아-8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 40백만원 (9.2%)
· 상계1-3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 4백만원 (1.1%)
· 상계1-3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3억 28백만원 (29.8%)
· 구로1-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7억 99백만원 (17.9%)
· 구로1-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4억원 (32.6%)
· 시흥고지-2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29억 4백만원 (45.8%)
· 시흥고지-2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71백만원 (8.1%)

· 가락-3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24억 37백만원 (38.1%)
· 가락-3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2억원 (15.2%)
· 방학-4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53백만원 (1.9%)
· 천호-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71억 93백만원 (33.8%)
· 천호-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3억 90백만원 (26.4%)
· 이문-2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71억 55백만원 (51.6%)
· 이문-2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 84백만원 (15.3%)
· 신수-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4억 29백만원 (7.3%)
· 신수-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 10백만원 (17.9%)
· 방화1-9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98억 75백만원 (55.0%)
· 방화1-9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2억 80백만원 (18.9%)
· 불광 1-16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25억원 (96.4%)
· 불광 1-16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 50백만원 (30.0%)
· 문래-4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23억 77백만원 (75.7%)
· 문래-4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2억 20백만원 (44.0%)
· 명륜-4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35억원 (96.8%)
· 명륜-4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원 (100.0%)
· 제기1-2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69백만원 (8.6%)
· 흑석-1-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 90백만원 (26.3%)
· 길동-5-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 44백만원 (11.6%)
· 노량1-2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 59백만원 (41.9%)
· 고척2-7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3억 8백만원 (18.3%)
· 군자-1-1,2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3억 85백만원 (50.0%)
· 풍납-1-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 2백만원 (21.6%)
· 미아-7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 23백만원 (25.0%)
· 서남 하수처리구역 사각형거 보수보강	59억 86백만원 (36.3%)
· 중랑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보수보강	7억 10백만원 (2.8%)
· 난지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보수보강	13억 25백만원 (25.1%)
· 서남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보수보강	17억 40백만원 (30.7%)
·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2-1단계)	101억 20백만원 (32.7%)
·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2-1단계)	2억 20백만원 (12.2%)

· 차집관로 성능개선	38억 56백만원 (51.9%)
· 탄천물재생센터 민간투자사업	19백만원 (12.0%)
· 중랑물재생센터 차집관로 기술진단용역	2억 45백만원 (25.7%)
· 서남물재생센터 차집관로 기술진단용역	1억 40백만원 (25.9%)
· 차집관로 GIS DB 정확도개선용역(중랑,난지)	5억 54백만원 (48.0%)
· 물재생센터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운영설비 개선방안 용역	1억 81백만원 (32.9%)
· 하수 차집관로 유지보수	30억원 (46.9%)
· 수처리분야 기계설비 유지보수	4억 43백만원 (4.3%)
· 난지물재생센터 운영	14억 2백만원 (4.4%)
· 난지물재생센터 운영	5억 15백만원 (12.8%)
· 차집관로 보수공사	102억 98백만원 (55.7%)
· 센터 내 토목 및 건축시설물 보수공사	11억 40백만원 (12.3%)
· 소방 및 중대재해시설 유지보수	5억 11백만원 (52.2%)
· 수처리분야 기전설비 유지보수(연간단가)	2억 29백만원 (13.5%)
· 수처리분야 기계설비 유지보수 및 개량	27억 18백만원 (29.5%)
· 수처리분야 전기설비 유지보수 및 개량	51백만원 (4.6%)
· 농축시설 유지보수 및 개량	3억 54백만원 (10.2%)
· 정화조분야 유지보수 및 개량	3억 2백만원 (60.4%)
· 분뇨·탈수분야 유지보수 및 개량	7억 4백만원 (21.0%)

○ 사고이월 원인 및 이월액 대비 비율

· 공사 중 장애요인발생(16건)	454억 42백만원 (19.9%)
· 사전절차지연(21건)	300억 36백만원 (13.2%)
· 유관사업지연(4건)	38억 49백만원 (1.7%)
· 사업계획변경(7건)	110억 79백만원 (4.9%)
· 관급자재 납품 지연	101억 20백만원 (4.4%)
· 용역준공기한 미도래(38건)	402억 43백만원 (17.6%)
· 기타(10건)	875억 22백만원 (38.3%)

□ 전 용 (결산서 p.388~389)

○ 예산전 용은 “인력운영비”등 총 6건, 7억 23백만원임.

(단위: 백만원, %)

연 번	부서	세부사업(통계목)	예산액	전용액		전 용 승인일
				증 액	감 액	
총 6건			111,171	723	△723	
1	물재생계획과	인력운영비(국민건강보험금)	206		△14	'25.3.25
		인력운영비(보수)	5,192	14		
2	중량물재생센터	인력운영비(연금부담금)	2,920		△6	'25.3.26
		인력운영비(보수)	11,150	6		
3	중량물재생센터	인력운영비(연금부담금)	2,920		△2	'25.4.9
		인력운영비(보수)	11,150	2		
4	중량물재생센터	중량물재생센터 운영(재료비)	6,430		△200	'25.11.4
		오니처리분야 기계설비 유지보수(시설비)	1,750	200		
5	중량물재생센터	중량물재생센터(공공운영비)	60,001		△500	'25.11.4
		수처리분야 설비 유지보수(시설비)	4,260	500		
6	물재생계획과	인력운영비(연금부담금)	12,24		△1	'25.11.26
		인력운영비(보수)	5,192	1		

□ 변경사 용

○ 예산 변경사 용은 “서운로 일대 저지고지수로”등 총 6건, 8억 29백만원임.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통계목)	예산액	변경사용액		변경사용 승인일
			증 액	감 액	
총 11건		48,384	829	△829	
1	물산업 미니 클러스터 실증단지 조성(시설비)	205	-	△64	
	물산업 미니 클러스터 실증단지 조성(감리비)	-	64	-	
2	미아-8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시설비)	870		△13	
	미아-8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감리비)	21	13		
3	서운로 일대 저지고지수로 정비(시설비)	10,143		△305	
	서운로 일대 저지고지수로 정비(감리비)	96	305		
4	신수-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시설비)	2,925		△92	
	신수-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감리비)	425	92		
5	도림천 CSOs 간이처리시설 설치(시설비)	1,249		△104	

연번	세부사업(통계목)	예산액	변경사용액		변경사용 승인일
			증 액	감 액	
	도립천 CSOs 간이처리시설 설치(감리비)	-	104		
6	중량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2-1단계)(시설비)	30,650	251		
	중량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2-1단계)(시설부대비)	260		△251	

□ 불용 (결산서 p.168~277)

○ 집행잔액(불용액)은 707억 2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5.7%임.

○ 원인별 예산 불용 현황은 다음과 같음.

- 낙찰차액	302억 33백만원 (42.8%)
- 지출잔액	284억 87백만원 (40.3%)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13억 35백만원 (16.0%)
- 예비비 잔액	6억 47백만원 (0.9%)

합 계 707억 2백만원 (100%)

○ 원인별 예산 불용 현황 중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은 ‘하수박스 안전진단 등 용역’ 등 4건으로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 유
계	11,334	1,224	
하수박스 안전진단 등 용역	1,025	33	소형사각형거(1.0×1.0m 이하)는 장 비측정이 불가하여 라이더 측정물량 정산(동대문구)
대조동 일대 침수지역 하수관로 성능향상 사업(3차)	4,009	230	“대조1구역” 재개발로 인해 정비대 상 제외
지능형 물재생센터 구축방안 용역	300	51	측정분석비(조사수량 변경) 및 공급 가액 변경에 따른 손해배상보험료 감액
총인처리시설 위탁관리	6,000	910	위탁대행업체 약품비 절감에 따라 위탁비 절감

□ 세출 결산 세부내역 (결산서 p.168~277)

(단위: 백만원, %)

구분	정책	단위사업	예산현액 (A)	지출원인 행위액(B)	지출액 (C)	이월액 (D)	불용액 (A-(C+D))	집행율 ((C+D)/A)
		합계	1,242,122	1,085,486	928,811	242,609	70,703	94.3
		수익적지출	548,898	511,157	485,517	31,033	32,348	94.1
		하수시설관리(사업)	103,002	97,637	86,892	13,083	3,026	97.1
		하수도관리(사업)	19,160	16,359	12,480	5,658	1,021	94.7
		하수관로 신설개량(사업)	59,864	58,813	57,611	1,439	814	98.6
		하수관로 보수보강(사업)	23,978	22,465	16,801	5,986	1,191	95.0
		물재생시설 개선 및 관리(사업)	193,837	181,116	180,562	554	12,720	93.4
		물재생시설 개선 (사업)	10	10	10	-	-	100.0
		물재생시설 운영관리(사업)	193,827	181,106	180,552	554	12,720	93.4
		중량물재생센터 운영관리(사업)	115,000	106,333	106,388	3,000	5,612	95.1
		중량물재생센터 운영(사업)	68,161	63,564	63,619	-	4,542	93.3
		중량물재생센터 공통분야 유지보수(사업)	14,744	11,397	11,397	3,000	347	97.6
		중량물재생센터 수처리 유지보수(사업)	6,860	6,560	6,560	-	300	95.6
		중량물재생센터 오니처리 유지보수(사업)	1,950	1,944	1,944	-	6	99.7
		중량물재생센터 관리대행(사업)	23,285	22,868	22,868	-	417	98.2
		난지물재생센터 운영관리(사업)	78,051	70,120	55,724	14,396	7,931	89.8
		난지물재생센터 운영(사업)	35,774	28,403	26,487	1,916	7,371	79.4
		난지물재생센터 공통분야 유지보수(사업)	22,060	21,808	9,859	11,949	252	98.9
		난지물재생센터 수처리 유지보수(사업)	2,180	2,050	802	229	130	47.3
		난지물재생센터 오니처리 유지보수(사업)	900	802	802	-	98	89.1
		난지물재생센터 정화조 오니처리유지보수(사업)	500	422	120	302	78	84.4
		난지물재생센터 민간위탁관리(사업)	16,637	16,634	16,634	-	3	100.0
		행정운영경비(물재생계획과)	6,931	6,379	6,379	-	553	92.0
		인력운영비	6,673	6,159	6,159	-	515	92.3
		기본경비	258	220	220	-	38	85.3

(단위: 백만원, %)

구분	정책	단위사업	예산현액 (A)	지출원인 행위액(B)	지출액 (C)	이월액 (D)	불용액 (A-(C+D))	집행율 ((C+D)/A)
		행정운영경비(물재생시설과)	76	73	73	-	2	96.1
		기본경비(물재생시설과)	76	73	73	-	2	96.1
		행정운영경비(중량물재생센터)	16,448	15,166	15,166	-	-	92.2
		인력운영비(중량물재생센터)	15,972	14,789	14,789	-	-	92.6
		기본경비(중량물재생센터)	476	377	377	-	-	79.2
		행정운영경비(난지물재생센터)	12,553	11,833	11,833	-	-	94.3
		인력운영비(난지물재생센터)	12,126	11,489	11,489	-	-	94.7
		기본경비(난지물재생센터)	427	345	345	-	-	80.8
		재무활동	22,500	22,500	22,500	-	-	100.0
		내부거래지출(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22,500	22,500	22,500	-	-	100.0
		예비비(사업)	500	-	-	-	-	0.0
		예비비	500	-	-	-	-	0.0
		자본적지출	576,419	470,938	345,198	206,602	14,318	95.7
		하수시설관리(자본)	472,045	372,356	262,784	187,873	21,389	95.5
		하수도관리(자본)	13,509	12,068	10,326	1,814	1,369	89.9
		하수관로 신설개량(자본)	236,397	161,611	116,825	107,839	11,733	95.0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77,649	159,165	98,909	74,410	4,330	97.6
		하수관로 보수보강(자본)	44,490	39,612	36,723	3,890	3,957	91.3
		물재생시설 개선 및 관리(자본)	71,355	67,074	54,822	14,814	1,719	97.6
		물재생시설 개선 (자본)	51,566	48,672	36,601	14,633	332	99.4
		물재생시설 운영관리(자본)	19,789	18,401	18,220	181	1,387	93.0

(단위: 백만원, %)

구분	정책	단위사업	예산현액 (A)	지출원인 행위액(B)	지출액 (C)	이월액 (D)	불용액 (A-(C+D))	집행율 ((C+D)/A)
		중량물재생센터 운영관리(자본)	18,688	18,120	17,677	443	568	97.0
		중량물재생센터 운영(자본)	342	316	316	-	26	92.4
		중량물재생센터 공통분야 유지보수(자본)	1,460	1,428	1,428	-	31	97.8
		중량물재생센터 수처리 유지보수(자본)	14,086	13,738	13,296	443	348	97.5
		중량물재생센터 오니처리 유지보수(자본)	2,800	2,637	2,637	-	163	94.2
		난지물재생센터 운영관리(자본)	11,565	10,775	7,302	3,473	790	93.2
		난지물재생센터 운영(자본)	245	172	172	-	73	70.2
		난지물재생센터 공통분야 유지보수(자본)	100	90	90	-	10	90.0
		난지물재생센터 수처리 유지보수(자본)	8,570	8,096	5,327	2,769	474	94.5
		난지물재생센터 오니처리 유지보수(자본)	2,650	2,417	1,713	704	233	91.2
		이월자금	1,000	1,000	1,000	-	-	100.0
		이월재원 총당금	1,000	1,000	1,000	-	-	100.0
		재무활동	278	274	274	-	4	98.6
		내부거래지출	276	273	273	-	3	98.9
		보전지출(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2	1	1	-	1	50.0
		재무활동(물재생시설과)	1,341	1,341	1,341	-	-	100.0
		내부거래지출(물재생시설과)	1,341	1,341	1,341	-	-	100.0
		예비비(자본)	147	-	-	-	147	0.0
		예비비	147	-	-	-	147	0.0

(단위: 백만원, %)

구분	정책	단위사업	예산현액 (A)	지출원인 행위액(B)	지출액 (C)	이월액 (D)	불용액 (A-(C+D))	집행율 ((C+D)/A)
		이월예산 지출	116,805	103,390	98,095	4,973	13,737	88.2
		하수시설관리(사업)	5,363	4,808	4,808	-	555	89.7
		하수도관리(사업)	4,375	3,820	3,820	-	555	87.3
		하수관로 보수보강(사업)	988	988	988	-	-	100.0
		중량물재생센터 운영관리(사업)	1,302	1,276	1,276	-	26	98.0
		중량물재생센터 공통분야 유지보수(사업)	1,302	1,276	1,276	-	26	98.0
		난지물재생센터 운영관리(사업)	9,859	8,741	8,741	-	1,118	88.7
		난지물재생센터 공통분야 유지보수(사업)	9,859	8,741	8,741	-	1,118	88.7
		물재생시설 개선 및 관리(사업)	357	335	335	-	22	93.8
		물재생시설 개선 (사업)	291	282	282	-	10	96.9
		물재생시설 운영관리(사업)	66	53	53	-	12	80.3
		중량물재생센터 운영관리(자본)	258	251	251	-	6	97.3
		중량물재생센터 수처리 유지보수(자본)	258	251	251	-	6	97.3
		난지물재생센터 운영관리(자본)	5,924	5,536	5,183	353	388	93.5
		난지물재생센터 수처리 유지보수(자본)	1,737	1,625	1,625	-	112	93.6
		난지물재생센터 오니처리 유지보수(자본)	3,480	3,253	2,899	353	227	93.4
		난지물재생센터 정화조 오니처리 유지보수(자본)	707	658	658	-	49	93.1
		하수시설관리(자본)	80,540	75,507	70,566	4,619	5,354	93.4
		하수도관리(자본)	1,112	1,112	1,112	-	-	100.0
		하수관로 신설개량(자본)	34,636	30,027	25,468	4,619	4,549	86.9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44,791	44,368	43,986	-	805	98.2
		물재생시설 개선 및 관리(자본)	13,202	6,935	6,935	-	6,267	52.5
		물재생시설 개선 (자본)	8,636	2,917	2,917	-	5,719	33.8
		물재생시설 운영관리(자본)	4,566	4,018	4,018	-	548	88.0

□ 예산과목별 세출결산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정책사업	2025년도		2024년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예산현액	지출액	예산현액	지출액
	합 계	1,242,122	928,811	1,076,528	875,237	165,594	53,574
	수익적지출	548,897	485,517	513,254	463,536	35,643	21,981
	하수시설관리(사업)	103,002	86,892	79,801	72,020	23,201	14,872
	물재생시설 개선 및 관리(사업)	193,837	180,562	194,345	180,506	△508	56
	중량물재생센터 운영관리(사업)	115,000	106,388	106,382	102,572	8,618	3,816
	난지물재생센터 운영관리(사업)	78,051	55,724	74,199	54,776	3,582	948
	행정운영경비(물재생계획과)	6,931	6,379	6,817	5,993	114	386
	행정운영경비(물재생시설과)	76	73	73	61	3	12
	행정운영경비(중량물재생센터)	16,448	15,166	16,317	14,572	131	594
	행정운영경비(난지물재생센터)	12,553	11,833	12,898	10,962	△345	871
	재무활동	22,500	22,500	22,000	22,000	500	500
	재무활동(물재생시설과)	-	-	74	73	△74	△73
	예비비(사업)	500	-	347	-	153	-
	자본적지출	576,420	279,233	430,591	301,660	145,829	22,427
	하수시설관리(자본)	472,045	262,784	321,485	226,188	150,560	36,596
	물재생시설 개선 및 관리(자본)	71,355	54,822	63,321	37,338	8,034	17,484
	중량물재생센터 운영관리(자본)	18,688	17,677	18,,413	17,193	275	484
	난지물재생센터 운영관리(자본)	11,565	7,302	9,961	3,667	1,604	3,635
	이월자금	1,000	1,000	-	-	1,000	1,000
	재무활동	278	274	15,827	15,825	△15,549	△15,551
	재무활동(물재생시설과)	1,341	1,341	1,450	1,450	△109	△109
	예비비(자본)	147	-	135	-	△12	-
	이월예산지출	116,805	98,095	132,682	110,041	△15,877	△11,946
	하수시설관리(사업)	5,363	4,808	5,067	4,970	296	162
	중량물재생센터 운영관리(사업)	1,302	1,276	6,074	4,824	△4,772	△3,548
	난지물재생센터 운영관리(사업)	9,859	8,741	9,973	9,395	△114	△654
	물재생시설 개선 및 관리(사업)	357	335	961	961	△604	△626
	중량물재생센터 운영관리(자본)	258	251	1,323	1,029	△1,065	△778
	난지물재생센터 운영관리(자본)	5,924	5,183	2,941	1,741	2,983	3,442
	하수시설관리(자본)	80,540	70,566	74,832	65,043	5,708	5,523
	물재생시설 개선 및 관리(자본)	13,202	6,935	31,510	22,077	△18,308	△15,142

다. 재무제표 요약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5조)

1) 재무상태표 (결산서 p.65~66)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자산은 7조 399억 71백만원임.
- 자본은 7조 285억 30백만원으로 자기자본비율²⁾은 99.9%임.
- 부채³⁾는 114억 41백만원으로 부채비율은 0.1%임.
- 2025년도말 기준 채무⁴⁾는 없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2025년도말 현 재 액
		증 가	감 소	순증감	
부 채	8,691	11,441	8,691		11,441
채 무	-	-	-	-	-

2) 손익계산서 (결산서 p.67)

- 2025회계연도에서는 △794억 35백만원 당기순손실이 발생되었음.

(단위 : 백만원)

당기순이익(A)								
총계 (A=B+C)	영업손익(B)					영업외손익(C)		
	계 (B=D-G)	매출손익(D)			판매비와 관리비(G)	계 (C=G-H)	영업외수익 (G)	영업외비용 (H)
		소계 (D=E+F)	매출액 (E)	매출원가 (F)				
△ 79,435	△330,913	△298,017	801,153	1,099,171	32,896	251,479	251,565	86

※ 당기순이익(손실) = 영업손익+영업외손익

3)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결산서 p.68)

- 2025회계연도 이익잉여금은 △198억 48백만원임

2) 자기자본비율 = (자본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 × 100
 3) 부채는 회계학 상 대차대조표 대변에 기재되는 자본 이외의 모든 항목을 말하는 것으로서 금전 차입의 채무액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 × 100
 4) 채무액은 시재정투융자기금+유동성 장기부채를 말함.

(단위 : 백만원)

과 목		2025년(당기)		2024년(전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결손금)		△19,848		55,731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55,731		165,118	
	2. 전기오류수정이익	3,856		-	
	3. 전기오류수정손실	-		43,774	
	4. 당기순이익(손실)	△79,435		△65,613	
II.	이익적립금		-		-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미처리결손금)		△19,848		55,731

5. 검토 의견

가. 결산 총괄

- 2025회계연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수납액은 1조 2,053억 65백만원, 지출액은 9,288억 11백만원임.
-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2,765억 54백만원이며, 건설개량이월액⁵⁾ 143억 18백만원, 사고이월액 2,282억 91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39억 45백만원임.

[표] 최근 3년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A)					세 입 수납액 (B)	세 출 지출액 (C)	세계잉여금(B-C)		
	계	당초 예산	추경 예산	간주 처리	이월 예산			계	이월	순세계 잉여금
2025년도	1,242,122	910,112	181,411	33,794	116,805	1,205,365	928,811	276,554	242,609	33,945
2024년도	1,076,528	851,824	92,022	-	132,682	1,154,243	875,237	279,006	116,805	162,201
2023년도	1,007,442	886,400	27,384	-	93,658	1,032,513	807,809	224,704	132,682	92,022

- 순세계잉여금(339억 45백만원)은 수납액의 약 2.8%에 해당함.
- 손익계산서의 총 수익은 1조 559억 23백만원, 총 비용은 1조 1,321억 53백원으로 당기순손실은 △794억 35백만원임.

[표]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손실)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4년도	2023년도	2022년도	2021년도
당기순이익(손실)	△79,435	△65,613	△46,027	763	25,863

5) 「지방공기업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설·개량에 필요한 경비(자본예산)를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예산(1회 재이월 가능)으로 일반회계의 명사이월과 동일함

- 현재 특별회계의 2025회계연도 당기순손실은 지난 2024회계연도 당기순손실 656억 13백만원 대비 108억 22백만원의 추가손실이 발생하여 2023회계연도 이후 적자 운용 체제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
- 이는 매출원가가 '24년 1조 873억원 대비 119억원이 증가(1조 992억원)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하수도시설의 노후화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출원가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다행히 이와 관련하여 지난 '25.9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가 개정⁶⁾되어 '26년부터 '30년까지 5년간 하수도사용료를 연평균 9.5%(㎡당 연평균 84.4원)씩 인상하게 되었고,
 - 2026회계연도부터 하수도사용료 인상분에 따른 세입 재원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면 만성적인 당기순손실 발생 추이가 점차 둔화되면서 향후 특별회계의 전반적인 재정 수지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자산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 전력비 등의 원가 상승 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 서울시는 하수처리 과정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 도입, 수처리 공정 고도화를 통한 전력비·약품비 절감 등 자체적인 원가 절

6) [시행 2026. 1. 1.] [서울특별시조례 제9891호, 2025. 9. 29., 일부개정]

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충하는 등 다각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표] 손익계산서 요약(2025~2024년도)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4년	차액	비고
매출액(A)	801,153	808,121	△6,968	사용료수익, 분뇨처리, 타시도 하수처리 등 기타영업수익의 징수결정액
매출원가(B)	1,099,171	1,087,277	11,894	하수관로 운영유지비, 물재생센터 운영유지비 및 구축물(관로),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비
매출총손실(C=A-B)	△298,018	△279,156	△18,862	
판매비와관리비(D)	32,896	33,200	△304	일반관리비, 공기구비품 등 감가상각비
영업손실(E=C-D)	△330,913	△312,357	△18,556	
영업외수익(E)	251,565	247,802	3,763	이자수익, 타회계지원금수익, 유형자산 처분수익, 기타영업외수익 등
영업외비용(F)	86	1,059	△973	유형자산폐기손실, 기타영업외비용 등
당기순이익(G=E-F)	△79,435	△65,613	△13,822	
총수익	1,052,718	1,055,923	△3,205	매출액(A)+영업외수익(E)
총비용	1,132,153	1,121,536	10,617	매출원가(B)+판매비와관리비(D)+영업외비용(G)
당기순이익	△79,435	△65,613	△13,822	

나. 세입 결산 (결산서 p.164~167)

- 2025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1조 2,421억 22백만원, 징수결정액은 1조 2,307억 58백만원, 실제 수납액은 1조 2,053억 65백만원(징수결정액대비 97.9%)임.

[표]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 (B)	실제 수납액 (C)	미수납액 (B-C)	미수납액처리		징수율 (C/B)
					결손 처분	다음년도 이월	
2025년	1,242,122	1,230,758	1,205,365	25,393	218	25,175	97.9
2024년	1,076,528	1,174,344	1,154,243	20,101	917	19,184	98.3
2023년	1,007,442	1,084,600	1,032,513	52,086	209	51,877	95.2
증 감 (‘23년 대비)	234,680	146,158	172,852	△26,693	9	△26,702	2.7

-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결손처분 내역의 경우 시효 소멸⁷⁾이 2억 18백만원으로 전체를 차지하고 있고, 차년도 이월액의 경우 251억 75백만원이 미수납되었음.

[표] 공기업하수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백만원)

미수납액		25,393
	결손처분	218
	시효소멸	218
	기타(무재산, 착오부과 등)	0
	차년도 이월액	25,175
	무재산	988
	행방불명	-
	납세태만	4,182
	소송계류	-
	국외이주	-
	자금압박	15,685
	기타(납기미도래, 폐업 또는 부도 등)	4,321

7) 시효소멸의 법적근거(「지방세법」 제30조의5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지방세징수권")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차년도 이월액 중 미수납액 사유는 “무재산(9억 88백만원), 납세태만(41억 82백만원)” 및 “자금압박(156억 85백만원)”과 “기타(43억 21천만원)” 등이 차지하고 있는데,
- 이 중 ‘납세태만’은 납부할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예금·직장 등에 대한 신속한 압류 및 자진 납부 거부 부동산에 대한 강제 공매처분을 단행하는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전개해야 하고,
- 특히, 체납자의 소득 및 자산 유무에 대한 행정정보 연계와 정밀 추적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해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조기에 이끌어내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되는바 향후 징수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납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특별회계의 건전한 재원 확보를 도모해야 할 것임.

다. 세출 결산 (결산서 p.168~277)

1) 총괄

- 2025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조 2,421억 22백만원임.
- 집행액은 1조 1,714억 2천만원으로 이 중 9,288억 11백만원을 지출하고 2,426억 9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4.3%임
- 집행잔액(이하 “불용액”)은 707억 3백만원임.

[표]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당초 예산액	추경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 용	변 경 사 용	예산현액 (A)	집행액		불용액 (A-(B+C))	집행률 (B+C)/A
							지출액 (B)	이월액 (C)		
2025	910,112	215,205	116,805	723 △723	2,107 △2,107	1,242,122	928,811	242,609	70,703	94.3
2024	851,824	92,022	132,682	157 △157	2,007 △2,007	1,076,528	875,237	116,805	84,486	92.2
2023	886,400	27,385	93,658	371 △371	2,107 △2,107	1,007,442	807,809	132,682	66,951	93.4
총 감 (‘23년 대비)	23,712	187,820	23,147	352 △352	-	234,680	121,002	109,927	3,752	0.9

2) 예비비 지출 (결산서 p.322~323)

- 예비비⁸⁾는 세출 예산현액의 0.05% 수준인 6억 47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전액 미지출하였음

8) 「지방공기업법」 제31조(예비비)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표] 최근 3년간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2025년		2024년		2023년	
예산액	지출액	예산액	지출액	예산액	지출액
647	-	635	153	867	700

3) 예산이월 (결산서 p.324~369)

- 「지방공기업법」 제30조에 근거하여 2025회계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총 100건, 2,426억 9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9.5%임.

[표] 예산이월 사유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계		공사 중 장애요인발생		사전절차 지연		유관사업 지연		사업계획 변경		준공기한 미도래		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5	100	242,609	16	45,442	23	44,321	4	3,849	7	11,079	39	40,276	11	97,642
2024	109	116,805	24	33,000	15	16,633	8	6,494	11	10,049	46	41,779	5	8,849
2023	111	132,682	15	28,665	33	50,906	4	4,706	10	15,959	32	14,182	17	18,263
증감	△11	109,927	1	16,777	△10	△6,585	-	-857	△3	△4,880	7	26,094	6	79,379

- 건설개량이월 및 사고이월의 원인과 이월액 대비 비율을 살펴보면, 공사 중 장애요인발생 454억 42백만원(16건, 18.7%), 사전절차 및 유관사업지연 338억 85백만원(27건, 19.9%), 기타 976억 42백만원(11건, 40.2%)에 해당됨.

[표] 건설개량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사유별 현황

(단위: 백만원)

사 유 별	2025	
	건수	이월액(%)
공사 중 장애요인발생	16	45,442(18.7%)
사전절차지연	23	30,036(18.3%)
유관사업지연	4	3,849(1.6%)
사업계획변경	7	11,079(4.6%)
준공기한 미도래	39	10,120(16.6%)
기타	11	97,642(40.2%)
계	100	242,609(100.0%)

- 다음으로, 사고이월 금액이 예산현액의 30% 이상 되는 사업내역은 다음 [표]와 같음.

[표] 사고이월 30%이상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 현액	사고 이월액	집행 잔액	사고 이월율	사 유
1	물재생 계획과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외 부 결산감사	59	21	-	36%	준공기한 미도래
2	물재생 계획과	하수도 악취 저감 추진	6,105	2,450	-	40%	사전절차지연
3	물재생 계획과	고덕천 오수전용관로 설치 기 본 및 실시설계	500	296	-	59%	준공기한 미도래
4	물재생 계획과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30년이 상 원형하수관로 전수조사 및 기본계획	3,000	1,000	-	33%	준공기한 미도래
5	물재생 계획과	하수관로 수위계 설치	1,537	502	-	33%	준공기한 미도래
6	물재생 계획과	양재2동 일원 빗물펌프장 신설 및 배수개선	8,324	3,560	-	43%	유관사업지연
7	물재생 계획과	영등포, 신길펌프장주변 배수시 설(관로) 개선	9,460	6,762	-	71%	유관사업지연
8	물재생 계획과	양재동 일원 빗물펌프장 증설 및 배수개선	5,270	4,209	-	80%	사전절차지연
9	물재생 계획과	대림2 빗물펌프장 신증설 및 배수개선	2,577	1,123	-	44%	유관사업지연
10	물재생 계획과	강남역 일대 배수개선사업	4,040	3,626	-	90%	준공기한 미도래
11	물재생 계획과	성수동 돌레길 43 주변 외 1 개소 하수관로 개량	520	284	-	55%	유관사업지연
12	물재생 계획과	독서당로 46길 주변 외 1개소 하수관로 개량	392	353	-	90%	유관사업지연
13	물재생 계획과	대동초 주변 외 1개소 사각형 거 구조개선	2,672	1,721	-	64%	사전절차지연
14	물재생	강남구청 주변 하수관로 개량	500	440	-	88%	유관사업지연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 현액	사고 이월액	집행 잔액	사고 이월율	사 유
	계획과						
15	물재생 계획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118,170	75,255	9,469	64%	사전절차지연
16	물재생 계획과	면목3-5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	21,635	8,065	-	37%	사전절차지연
17	물재생 계획과	일원-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	14,344	7,950	-	55%	유관사업지연
18	물재생 계획과	이문-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	6,389	2,857	-	45%	준공기한 미도래
19	물재생 계획과	용산-22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	17,592	6,161	-	35%	준공기한 미도래
20	물재생 계획과	시흥고지-2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7,209	2,974	-	41%	준공기한 미도래
21	물재생 계획과	가락-3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	7,716	2,637	-	34%	유관사업지연
22	물재생 계획과	천호-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	22,729	7,583	-	33%	준공기한 미도래
23	물재생 계획과	이문-2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	15,067	7,338	-	49%	준공기한 미도래
24	물재생 계획과	방화1-9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	19,444	10,155	-	52%	준공기한 미도래
25	물재생 계획과	불광 1-16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3,094	2,650	-	86%	사전절차지연
26	물재생 계획과	문래-4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	3,639	2,597	-	71%	준공기한 미도래
27	물재생 계획과	명륜-4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	4,115	4,000	-	97%	사전절차지연
28	물재생 계획과	노량1-2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	380	159	-	42%	사전절차지연
29	물재생 계획과	군자-1-1,2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770	385	-	50%	사전절차지연
30	물재생 계획과	서남 하수처리구역 사각형거 보수보강	16,499	5,986	-	36%	준공기한 미도래
31	물재생 계획과	서남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보수보강	5,787	1,774	-	31%	사전절차지연
32	물재생 시설과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2-1단계)	32,720	10,340	-	32%	사전절차지연
33	물재생 시설과	차집관로 GIS DB 정확도 개선 용역(중랑,난지)	1,155	554	-	48%	준공기한 미도래
34	물재생 시설과	물재생센터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운영설비 개선방안 용역	550	181	-	33%	준공기한 미도래
35	중랑물 재생센 터	하수 차집관로 유지보수	6,400	3,000	-	47%	준공기한 미도래
36	난지물 재생센 터	차집관로 보수공사	18,501	10,298	-	56%	준공기한 미도래
37	난지물 재생센 터	소방 및 중대재해시설 유지보 수	1,080	511	-	47%	준공기한 미도래
38	난지물 재생센 터	정화조분야 유지보수 및 개량	500	302	-	60%	준공기한 미도래

○ 이 중 ‘하수도 악취 저감 추진’ 사업은 공공하수도 하수악취 점검 및 모니터링,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현액 61억 5백만원 대비 40%인 24억 5천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음.

- 동 사업은 ‘서울형 하수악취 저감 기본계획’에 따라 ’22년~’24년까지 75개 주요 관리지역에 대한 악취저감 사업을 완료하고 ’25년부터는 해당 지역에 대한 효과분석 및 정기 모니터링, 보완사업, 그리고 수시 악취민원 발생지역에 대한 대응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표] 세부사업 사고이월 발생 현황

(단위: 천원)

연번	자치구	사고이월액	세부사업명	사고이월 사유
1	본청	86,065	2025 하수악취 저감 효과분석 용역	외부 전문가(기관) 선정, 자문회의 개최, 자문의견 검토 등에 일정 기간(약 2개월)이 소요되어 과업 기간 연장('25.12 → '26.2)으로 연내 예산 미집행
2	구로구	200,000	수시민원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사전절차(특정제품심사, 계약심사 등) 이행에 절대 공기 부족
3	서초구	1,661,030	수시민원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사전절차(특정제품심사, 계약심사 등) 이행에 절대 공기 부족
4	강남구	377,250	침수 예경보 및 하수악취 저감 복합시설 설치	'침수 예방 및 악취저감 복합시설' 설치를 위한 조사 기간 소요('25.7.~11.) 복합설치 관련 물품 제작 기간 소요
5	도봉구	123,333	보완사업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사전절차(특정제품심사, 계약심사 등) 이행에 절대 공기 부족
6	강북구	2,455	보완사업	악취저감시설 유지·보수 공사 이행에 절대 공기 부족

- 이 중 효과분석 용역에서 외부전문가 자문 및 검토 기간(2개월)이 추가됨에 따라 준공기한을 당초 '25.12월에서 '26.2월로 변경한 것과 보완사업 및 수시민원에 따른 악취저감사업이 사전절차(특정제품심사, 계약심사 등) 이행 등으로 지연되어 절대공기

의 부족에 따라 사고이월한 것임.

- 이러한 사례에서 비추어 볼 때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에는 학술·기술용역의 필수적인 자문 단계를 고려하여 용역 기간을 설정하는 한편, 민원 상시 대응성 공사는 사전절차 일정을 최대한 서둘러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다음으로, ‘양재2동 일원 빗물펌프장 신설 및 배수개선’ 외 3개 사업은 지난 ’22. 8. 8일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침수해소를 위한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사업별 사고이월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표] ‘양재2동 일원 빗물펌프장 신설 및 배수개선’ 외 4개 사업 사고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 현액	사고 이월액	집행 잔액	사고 이월율	사 유
1	물재생 계획과	양재2동 일원 빗물펌프장 신설 및 배수개선	8,324	3,560	-	43%	지장물(통신, 도시가스, 상수도) 이설 지연으로 인한 준공기한 연장으로 사고이월 필요
2	물재생 계획과	영등포, 신길펌프장 주변 배수시설(관로) 개선	9,460	6,762	-	71%	신설 빗물펌프장 유입관로에 저축되는 한전 지중송전선로(154Kw) 이설 어려워 변경설계(지장물에 저축되지 않도록 유입관로 선형 변경) 후 공사 추진 예정이므로 예산 사고이월 필요 (2026년 9월 완공 예정)
3	물재생 계획과	양재동 일원 빗물펌프장 증설 및 배수개선	5,270	4,209	-	80%	'사절절차(설계, 계약심의위원회, 계약심사 등) 지연에 따른 착공('25.9.15.) 지연
4	물재생 계획과	대림2 빗물펌프장 신설 증설 및 배수개선	2,577	1,123	-	44%	설계용역 지연(2024.10. 준공)에 따른 공사 발주 및 집행 시기 지연으로 이월 필요

- 먼저, ‘양재2동 일원 빗물펌프장 신설 및 배수개선’ 사업은 예산현액 83억 24백만원 대비 43%인 35억 6천만원을 사고이월하였는데,
- 이는 하수관로(박스) 신설 구간 시험터파기 결과 도시가스 및

상수도 등의 지장물이 다수 발견되면서 시설물 관리기관과의 협의⁹⁾ 및 이설 지연에 따라 공사 준공기한을 당초 '25.12.31일에서 '26.5.31일로 변경한 것에 기인함.

- 다음으로, ‘영등포, 신길펌프장주변 배수시설(관로) 개선’ 사업은 예산현액 94억 6천만원 대비 71%인 67억 62백만원을 사고이월 하였는데,
- 이는 신설되는 영등포 빗물펌프장 및 신길유수지 방류관로에 저축되는 지장물(상수도 D1,650mm, D2,400mm, 도시가스 D250mm)의 이설 협의가 지연된 것과 빗물펌프장 유입관로에 저축되는 한전 지중송전선로(154KW)의 이설이 어려워 유입관로 선형을 변경하기 위해 설계변경을 시행함에 따른 것임.
- ‘양재동 일원 빗물펌프장 증설 및 배수개선’ 사업은 예산현액 52억 7천만원 대비 80%인 42억 9백만원을 사고이월 하였는데,
- 이는 설계완료 후 건설공사 시행을 위한 사전절차(계약심의, 계약심사 등) 이행과 입찰 관련 민원(1순위 업체 실적 관련) 발생에 따른 공사 적격심사 지연 등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면서 착공이 늦어져 연내 예산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발생한 것임.

9) ○ '25. 8.: 개포공동구 인접공사 협의(市 도로시설과, 서울시설공단)
○ '25. 9.: 도시가스관로 이설 협의(코원에너지서비스)
○ '25. 9.: 상수도관 이설 협의(강남수도사업소)
○ '25. 11.: 가로수 제거 및 이식 관련 협의(區 정원여가과)
○ '25. 11.: 신호등 철거 및 복구 관련 협의(동부도로사업소, 서초경찰서)

- 마지막으로, ‘대림2 빗물펌프장 신증설 및 배수개선’ 사업은 예산현액 25억 77백만원 대비 44%인 11억 23백만원을 사고이월 하였는데,
 - 이는 설계용역이 '24.9월 준공되었으나 사전절차 이행에 기간이 소요되면서 1차분 공사가 '25.1월이 되어서야 착공되었고, 이에 2차분 공사 역시 순연되어 '25.11월에야 착공됨에 따라 동절기 굴착공사 제한 등으로 연내 예산집행이 어려워 사고이월한 것임.
 - 동 사업들은 사전절차 이행, 지장물 이설 및 관련부서 협의 등 사전에 사업 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여 예산 사용의 비효율성을 낳았다고 보이는바,
 - 앞으로는 예산 편성 전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장애요인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같은 관행적 사고이월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성수동 들레길 43 주변 외 1개소 하수관로 개량’ 사업은 안전사고 및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노후·불량 하수관로를 개량하는 것으로, 예산현액 5억 2천만원 대비 55%인 2억 84백만원을 사고이월 하였는데,
- 이는 '25.4월 착공 이후 우천 및 폭염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사업구간 내 지장물(도시가스) 협의 결과 이설이 불가¹⁰⁾하여

공법 변경을 추진하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예산을 이월한 것으로, '26.4월 준공 완료된 상황임.

- 이 역시 설계과정에서 현장 지장물에 대한 조사가 미흡했다는 것을 방증하는바, 설계과정에서 보다 과학적이고 철저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같은 예산 사용의 비효율성을 방지해야 할 것임.

4) 전용¹¹⁾ (결산서 p.388~389)

- 예산의 전용은 ‘예산편성 이후 변동된 여건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방공기업법」 제29조에 근거하고 있음.
- 2025회계연도 예산 전용은 총 6건, 7억 23백만원임.

[표] 최근 3년간 예산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건 수	전용액	전용률	비 고
2025년도	1,242,122	6	723	0.06	
2024년도	1,076,528	1	157	0.02	
2023년도	1,007,442	2	371	0.04	

- 금회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 전용은 “중량물재생센터 운영”등 총 6건, 7억 23백만원을 전용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 [표]와 같음.

10) ‘성수동 돌레길 43 하수관로 개량공사 관련 원인자 이설 요청 회신 건, 예스코 제2025-1233, 2025.10.15.

11) ‘예산의 전용’은 “예산편성 이후에 변동된 여건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여 재정운용의 능률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9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에 근거하고 있음.

[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세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일자	사 유
					감액	증액		
6건				111,171	△723	723		
1	물재생 계획과	인력운영비	304-02 국민건강보험금	206	△14		'25.3.25	성과상여금 부족예산 전용
		인력운영비	101-01 보수	5,192		14		
2	중량물 재생센터	인력운영비	304-01 연금부담금	2,920	△6		'25.3.26	성과상여금 부족예산 전용
		인력운영비	101-01 보수	11,150		6		
3	중량물 재생센터	인력운영비	304-01 연금부담금	2,920	△2		'25.4.9	성과상여금 부족예산 전용
		인력운영비	101-01 보수	11,150		2		
4	중량 재생센터	중량물재생 센터 운영	206-01 재료비	6,430	△200		'25.11.4	슬러지수집기, 침사인양기, 펌프류 등 주요설비의 수 선비용 증가로 전용
		오니처리분야 기계설비 유지보수	401-01 시설비	1,750		200		
5	중량물 재생센터	중량물재생 센터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60,001	△500		'25.11.4	슬러지수집기, 침사인양기, 펌프류 등 주요설비의 수선 비용 증가로 전용
		수처리분야 설비유지보수	401-01 시설비	4,260		500		
6	물재생 계획과	인력운영비	304-01 연금부담금	12,24	△1		'25.11.26	직급보조비 부족예산 조정
		인력운영비	101-01 보수	5,192		1		

- 이 중 ‘중량물재생센터 오니처리분야 기계설비 유지보수’ 및 ‘중량물재생센터 수처리분야 설비유지보수’ 사업은 슬러지수집기, 침사인양기, 각종 펌프류, 밸브류 등 하수처리공정에 필수적인 주요 설비 노후화에 따른 수선빈도 증가, 인건비 및 재료비 상승 등으로 인해 수선비용이 증가하여 부족한 예산을 ‘중량물재생센터 운영’ 사업에서 전용한 것으로,

- 이는 매년 반복되는 시설 유지보수 수요와 예산 추계의 정밀성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바 향후 설비별 노후도 진단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인 예산 추계 체계를 구축하여 사후약방문식 전용을 지양해야 할 것임.

5) 채무부담행위액 (결산서 p.390)

- 해당사항 없음.

6) 계속비결산조서 (결산서 p.390)

- 해당사항 없음.

7) 변경사용¹²⁾

- 2025회계연도 예산 변경사용은 6건, 8억 29백만원임.

[표] 최근 3년간 변경사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건 수	변경사용액	변경사용률	비 고
2025년도	1,242,122	6	829	0.06	
2024년도	1,076,528	5	2,007	0.19	
2023년도	1,007,442	11	2,107	0.21	

- 금회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변경은 서운로 일대 저지고지수로 등 6건, 8억 29백만원을 변경하였음.

12) '예산의 변경'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명	세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일자	사 유
				감액	증액		
6건			46,844	829	829		
물재생 시설과	물산업 미니 클러 스터 실증단지 조성	401-01 시설비	205	-	△64	'25-01-17	전기공사 감리용역 의무발주에 따 른 감리비 조정
	물산업 미니 클러 스터 실증단지 조성	401-02 감리비	-	64	-		
물재생 계획과	미아-8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401-01 시설비	870		△13	'26-04-09	계약연장에 따른 감리비 부족예산 조정
	미아-8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401-02 감리비	21	13			
물재생 계획과	서운로 일대 저지고지수로 정비	401-01 시설비	10,143		△305	'25-06-10	계약연장에 따른 감리비 부족예산 조정
	서운로 일대 저지고지수로 정비	401-02 감리비	96	305			
물재생 계획과	신수-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401-01 시설비	2,925		△92	'25-07-11	계약연장에 따른 감리비 부족예산 조정
	신수-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401-02 감리비	425	92			
물재생 계획과	도림천 CSOs 간이처리시설 설치	401-01 시설비	1,249		△104	'25-10-31	공사현장 실정반영에 따른 감리비 부족예산 조정
	도림천 CSOs 간이처리시설 설치	401-02 감리비	-	104			
물재생 시설과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2-1단계)	401-01 시설비	30,650		△251	'25-12-02	관급자재 발주 필요에 따라 시설비 부족분 변경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2-1단계)	401-03 시설부대비	260	251			

- 이 중 ‘서운로 일대 저지고지수로 정비’ 사업은 지장물(상수관 D900mm) 이설이 불가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공사 준공기 한이 당초 '25.6.30일에서 '25.10.31일로 지연됨에 따른 감리비 증가분 3억 5백만원을 시설비에서 변경하여 사용한 것으로,
- 대규모 굴착공사의 사전 설계 검토가 면밀히 이루어지지 않아 공기 지연과 더불어 불필요한 예산의 변경사용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바,
- 향후 철저한 사전 현장 조사와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계획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이와 같은 예산사용의 비효율성을 최소화
해야 할 것임.

8) 불용 (결산서 p.168~277)

-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결과 집행잔액(불용액)은 707억 2
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5.7%임.

[표] 최근 5년간 예산 불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4년도	2023년도	2022년도	2021년도
예산현액	1,242,122	1,076,528	1,007,442	1,034,081	1,015,340
불용액	70,702	84,486	66,951	104,998	108,009
불용률	5.7	7.9	6.6	10.1	11.6

- 원인별 예산 불용 현황을 살펴보면, 낙찰차액과 지출잔액이 전
체 불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편성 단계에
서 적정 비용 산정이 면밀히 이루어지지 못해 예산이 과다하
게 편성된 측면이 있어 보임.

[표] 원인별 예산 불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합 계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2025년도(A)	70,702	-	-	11,335	30,233	28,487	647
2024년도(B)	84,486	-	-	15,920	14,186	53,898	482
2023년도	66,951	-	-	1,224	15,539	50,021	167
2022년도	104,998	-	-	11,315	30,472	62,663	548
2021년도	108,009	-	-	21,789 (20.2)	26,449 (24.5)	59,286 (54.9)	485 (0.4)
2020년도	96,549	199 (0.2)	-	18,007 (18.7)	7,404 (7.7)	69,811 (72.3)	1,129 (1.2)
2019년도	104,740	9,727 (9.3)	2,837 (2.7)	34,539 (33.0)	5,734 (5.5)	44,898 (42.9)	7,004 (6.7)
증 감(A-B)	11,461	△199	-	3,812	19,405	△10,555	△644

○ 이처럼 한정된 재원이 낙찰차액 등의 명목으로 장기간 묶여 결과적으로 시급성을 요하는 타 사업에 적기 투입되지 못하는 등 예산 배분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바,

- 향후 축적된 공종별 집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산편성을 보다 현실화하는 한편, 발주 후 확정된 낙찰차액 등에 대해서는 추경 등을 통해 감액 처리하여 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 다음으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불용률 30% 이상 사업 (불용액 3억원 이상 포함) 현황을 살펴보면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등’ 등 총 50건에 해당됨.([아래 표] 참고)

[표] 불용률 30%이상 또는 불용액 3억원 이상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불용액					
				합계 (B)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 차액	지출 잔액	예비비	비율 (B/A *100)
합 계		692,818	518,646	58,640	9,526	22,554	25,795	647	8.5%
1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11,617	8,129	857	489	365	4	-	7.4%
2	자치구 하수도 전문감리	7,112	6,779	333	-	333	-	-	4.7%
3	하수도 악취 저감 추진	6,105	3,350	305	-	-	305	-	5.0%
4	노후불량 하수관로 종합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3,356	1,996	841	-	833	8	-	25.1%
5	하수관로 유지관리비	28,045	27,662	383	-	-	383	-	1.4%
6	노후 불량 하수맨홀 정비	21,789	20,823	310	-	-	310	-	1.4%
7	기술진단에 따른 하수관로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1,794	951	843	-	-	843	-	47.0%
8	지하수 등 출수량 조사지원	24	11	13	-	-	13	-	54.2%
9	예비비	647	-	647	-	-	-	647	100.0%
10	하수관로 원격감시시설 유지관리	200	93	107	-	-	107	-	53.5%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불용액					
				합계 (B)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 차액	지출 잔액	예비비	비율 (B/A *100)
	(위탁사업비)								
11	하천토구형 CSOs 간이처리시설 유지관리	186	66	120	-	18	101	-	64.5%
12	목동아파트 주변 하수도 정비 계획 수립 용역	137	91	46	-	-	46	-	33.6%
13	대치역사거리 일대 빗물펌프장 신설 및 배수개선	6,290	-	6,290	6,290	-	-	-	100.0%
14	도림천 일대 외 2개소 배수개 선사업	6,000	444	740	20	-	720	-	12.3%
15	취약지역 우수관로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170	42	127	127	-	-	-	74.7%
16	양천로47길 주변 외 1개소 하수관로 개량	711	383	328	-	122	205	-	46.1%
17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118,170	32,077	1,369	-	1,369	-	-	1.2%
18	중곡-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	13,795	9,820	343	-	-	343	-	2.5%
19	영등포로 410~영등포로 384-1 하수관로 개량	829	540	289	-	198	90	-	34.9%
20	도봉로151길126 주변 외 3개 소 하수관로 개량	352	245	107	-	31	76	-	30.4%
21	남가좌3-3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723	1,399	324	-	-	324	-	18.8%
22	장충-8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5,779	4,913	796	-	-	796	-	13.8%
23	미아-8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634	708	785	-	-	785	-	48.0%
24	신월1-4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6,240	5,831	409	-	-	409	-	6.6%
25	방학-4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3,269	2,867	349	-	349	-	-	10.7%
26	길동-5-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250	781	325	-	-	325	-	26.0%
27	고척2-7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685	951	426	-	-	426	-	25.3%
28	난지 하수처리구역 사각형거 보수보강	4,540	3,879	660	-	660	-	-	14.5%
29	서남 하수처리구역 사각형거 보수보강	16,499	10,203	310	-	310	-	-	1.9%
30	중랑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보수보강	25,139	22,000	2,429	-	2,429	-	-	9.7%
31	탄천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보수보강	8,286	7,210	1,076	-	1,076	-	-	13.0%
32	옥수-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410	66	144	-	118	26	-	35.1%
33	도봉2-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310	214	96	-	96	-	-	31.0%
34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부대비	100	65	35	-	-	35	-	35.0%
35	국고보조금반환금	2	1	1	-	-	1	-	50.0%
36	인력운영비	5,199	4,747	453	-	-	453	-	8.7%
37	난지물재생센터 수처리시설 복개공원화	745	-	745	-	-	745	-	100.0 %
38	난지물재생센터 분뇨처리시설 지하화	861	-	861	-	-	861	-	100.0 %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불용액					
				합계 (B)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 차액	지출 잔액	예비비	비율 (B/A *100)
39	탄천물재생센터 수처리시설 확충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460	-	460	-	-	460	-	100.0 %
40	난지물재생센터 주전기실 신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300	-	300	300	-	-	-	100.0 %
41	에너지 관리 시스템 구축	85	55	30	-	30	-	-	35.3%
42	물재생센터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설치	9,653	7,282	2,370	2,300	-	70	-	24.6%
43	차집관로 성능개선	12,924	7,712	1,356	-	-	1,356	-	10.5%
44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위탁사업비	209,073	195,305	13,768	-	13,768	-	-	6.6%
45	중랑물재생센터 운영	68,503	63,935	4,568	-	-	4,568	-	6.7%
46	총인처리시설 관리대행	5,360	5,003	357	-	-	357	-	6.7%
47	인력운영비	15,972	14,789	1,183	-	-	1,183	-	7.4%
48	난지물재생센터 운영	38,154	27,699	8,539	-	-	8,539	-	22.4%
49	수처리분야 기계설비 유지보수 및 개량	9,207	6,040	449	-	449	-	-	4.9%
50	인력운영비	12,127	11,489	638	-	-	638	-	5.3%

○ 이 중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사업은 하
수도관리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현액 116억 17백만원 대비 7.4%인 8억 57백만원을 불용함.

- 이는 세부사업 중 '25년도 하수관로 GID DB 정확도 개선용
역'의 낙찰차액(3억 65백만원)과 '하수관로 GIS DB 정확도 개
선용역' 사업대상 중 일부가 은평구 재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됨
에 따라 사업물량이 축소¹³⁾되어 발생(4억 88백만원)한 것임.

13) ■ 사업축소 물량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당초	설계변경	증감
계	8,209	7,721	△488
정확도 사업 1권역	4,609	4,589	△20
정확도 사업 2권역	3,600	3,132	△468

- 자치구의 정비사업 구역 지정 현황은 사전에 충분히 파악이 가능한 정보임에도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이와 같은 예산 사용의 비효율성을 발생하였는바,
 - 사업구역이 주택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하는 경우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주택정비사업 등의 주변 개발 계획과의 중복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상호 검증함으로써 예산 추계의 정밀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 ‘대치역사거리 일대 빗물펌프장 신설 및 배수개선’ 사업은 지난 ’22.8.8일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대치역 사거리 일대의 침수해소를 위해 신속한 우수배제를 목표로 하수관로 및 빗물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현액 62억 9천만원 전액을 불용함.
- 동 사업은 설계 과정에서 주민 집단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빗물펌프장 설치를 단독으로 추진하는 대신 인근 재건축 사업과 연계하여 추후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전면 수정¹⁴⁾되면서 당해 연도 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져 예산 전액을 불용한 것임.
 - 이는 예산편성 및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 지역주민 민원 발생 소지, 주변 개발계획과의 연계성 등 사업 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장애요인을 사전에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해 예산 전액 불용이라는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한 것으로,

14) - (당초) 빗물펌프장 신설 + 관로개량 등 배수개선

- (변경) 재건축사업(미도, 은마, 선경 아파트) 추진 시 방재시설[저류조+펌프 등]구축 후 기부채납

- 향후에는 지역주민 협의와 주변지역 개발사업에 대해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하여 이처럼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빗물펌프장이라는 침수피해 핵심 예방시설을 주민 민원 등으로 적기에 설치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인 만큼 서울시는 이처럼 기후변화 대응 사업들을 추진할 때는 사전에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해야 할 것임.
- ‘취약지역 우수관로 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은 침수취약지역 내 우수배제시설 현황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노면수 처리를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예산현액 1억 7천만원 대비 74.7%인 1억 27백만원을 불용함.
- 동 사업은 '24년 최초 예산편성하여 동년 11월 용역에 착수하고 2025회계연도로 사업비 1억 7천만원을 사고이월하였는데, '25년 초 용역 착수보고 중 추가검토 사항(자치구 현장 의견 재수렴 등)¹⁵⁾이 발생함에 따라 용역 기간을 6개월 연장¹⁶⁾하면서 또다시 예산 이월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사고이월된 예산의 재이월이 불가하여 집행잔액 1억 27백만원을 불용 처리한 것임.

15) 노면수 침수지역을 현장에서 직접 파악하고 있는 25개 자치구에 대한 의견을 재수렴 및 침수이력 등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한 과업대상지역을 선정하도록 추가 지시

16) 당초 '25.11. → 변경 '26.5.

- 착수보고 단계에서 자치구의 현장 의견을 재수렴하는 등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과업 기간을 연장한 것은 타당한 부분이 있어 보이나,
- 신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사업과 관련된 유관기관들의 의견수렴은 가급적 사업계획 단계에서 충분히 시행하여 사업 착수 후에 이처럼 유관기관 요구사항에 따라 추가 검토사항 발생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를 최소화해야 할 것임.
- ‘난지물재생센터 주전기실 신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2040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추진에 따라 난지물재생센터의 안정적인 전력수급망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예산현액 3억원 전액을 불용함.
- 동 사업은 당초 '24년도에 난지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슬러지 건조시설, 분뇨처리지하화, 복개공원화 등의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예상되는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총 32,600KW 규모의 전력을 증설할 계획이었으나,
- '24.2월 고양시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신청이 반려¹⁷⁾된 후 '24.11월 서울시와 고양시 간에 난지물재생센터 전면지하화가 합의됨에 따라 분뇨지하화 및 슬러지건조시설 사업 추진을 중단하게 되어 전력증설 규모를 당초 32,600KW에서 20,000KW로 조정함에 따라 설계용역비를 '25회계연도로 사고이

17) 2026년 수도권(경기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1차 변경 입지대상시설 신청서 반려통보(난지물재생센터), 고양시 도시계획정책관-1553, 2024.2.2.

월 하였는데,

- 이후 한전과의 협의를 통해 총인처리시설 전용전력 3,600kW를 별도 확보하면서 주전기실 증설 필요성이 감소하여 설계용역 이월 예산을 전액 불용처리한 것임.
 - 급격한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대규모 예산 매몰을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측면은 이해되나 결과적으로 초기 계획의 전면 수정으로 인해 편성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비효율성을 낳았는바,
 - 향후에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과 관련한 대외 변수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 운용의 계획성과 효율을 높여야 할 것임.
- ‘물재생센터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하수슬러지의 안정적 처리 및 보관·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저감 등을 통해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4개 물재생센터에 슬러지건조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현액 96억 53백만원 대비 24.6%인 23억 7천만원을 불용함.
- 동 사업은 ‘하수슬러지 처리 자립화 대책(시장방침 제252호)’에 따라 물재생센터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총 2,125톤)의 100% 자체 처리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이 중 난지물재생센터 관련 예산이 금회 전액 불용되면서 대규모 집행잔액이 발생함.

[표] 물재생센터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설치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2023)	2024	2025	2026 이후
계	163,700	88,669	8,481	11,500	55,050
중량물재생센터	39,200	26,550	1,100	3,250	8,300
난지물재생센터	46,200	900	2,300	-	43,000
탄천물재생센터	21,100	4,019	5,081	8,250	3,750
서남물재생센터	57,200	57,200	0	0	0

- 이는 난지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제출¹⁸⁾ ('24.2월)과 '24년 11월 '서울시-고양시 난지센터 전면지하화'가 전격 합의된 상황을 반영하여 기존에 단독으로 추진 중이던 슬러지건조시설 설치 사업을 향후 '난지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에 통합 추진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2024회계 연도로부터 사고이월된 관련 예산 전체(23억원)를 불용한 것임.
- 동 사업 역시 외부 정책 환경(자치단체 간 정책적 합의, 민간투자사업 추진)의 변화에 대응하여 대규모 중복 투자와 예산 매몰을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 이해되고,
- 향후 '난지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될 경우 슬러지건조시설을 반드시 반영하여 당초 목표한 하수슬러지 자체 처리 능력을 갖추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18) ■ 난지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제안 개요

- 사업위치 : 난지물재생센터 내
- 사업규모 : 난지물재생센터 전면 지하화, 상부 주민친화공간 조성
 - 하수처리시설 68만^m³/일,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140만^m³/일
 - 건조시설 410톤/일, 분뇨처리시설 4,500kl/일 등
- 사업방식 : BTO-a 방식(손익공유형)

9) 재정건전성 관련

- 2025년말 기준 자산은 7조 399억 71백만원, 부채는 114억 41백만원으로 순자산(자본)은 7조 285억 3천만원임.
- 2025년도말 기준 부채는 114억 41백만원으로 부채비율은 0.1% 수준임.

<재무제표 요약>

(단위: 백만원)

구 분	자 산	부 채	자 본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2025년도	7,039,971	11,441	7,028,530	1,055,923	1,132,153	△79,435
2024년도	7,030,739	8,691	7,022,048	1,055,923	1,121,536	△65,613
2023년도	7,091,994	10,175	7,081,820	1,010,283	1,056,310	△46,027
2022년도	7,082,670	3,790	7,078,879	1,018,497	1,017,733	763
2021년도	7,034,397	7,437	7,026,960	937,880	912,018	25,863
증 감	5,574	4,004	1,570	118,043	220,135	△105,298

<최근 5년간 자본 및 부채 변동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3년도	2022년도	2021년도
자 본(A)	7,039,971	7,022,048	7,081,820	7,078,879	7,026,960
부 채(B)	11,441	8,691	10,175	3,790	7,437
비율(B/A)	0.1	0.1	0.1	0.1	0.1

- 2025년도말 기준 채무는 없음.

<부채 및 채무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2025년도말 현 재 액
		증 가	감 소	순증감	
부 채	8,691	10,926	8,176	-	11,441
채 무	-	-	-	-	-

- 한편, 공급원가는 톤당 1,292.93원, 공급단가(요금)는 톤당 696.96원으로 요금현실화율¹⁹⁾은 53.91%임(결산서 p.413~414).

<하수도요금의 톤당 원가 및 비용>

(단위: 원,%)

구분	계	인건비	동력비	약품 재료비	수선 교체비	경상·민간 이전	감 가 상각비	차입금 이자비용	기타경비 ^{주)}
2025	1,292.93 (100.0%)	60.28 (4.7%)	50.69 (3.9%)	9.20 (0.7%)	349.31 (27.0%)	237.01 (18.3%)	338.35 (26.2%)	298.70 (23.1%)	△50.61 (△3.9%)
2024	1,257.84 (100.0%)	52.75 (4.59%)	45.47 (3.61%)	11.06 (0.88%)	342.33 (27.22%)	229.24 (18.22%)	333.61 (26.52%)	296.16 (23.55%)	△52.78 (△4.59%)
2023	1,246.27 (100.0%)	47.08 (3.8%)	47.45 (3.8%)	16.18 (1.3%)	347.78 (27.9%)	175.62 (14.1%)	343.54 (27.6%)	306.26 (24.6%)	△37.64 (△3%)
2022	1,213.52 (100.0%)	48.13 (4.0%)	30.07 (2.5%)	11.71 (1.0%)	383.54 (31.6%)	120.11 (9.9%)	324.71 (26.7%)	308.11 (25.4%)	△12.85 (△1.1%)
2021	1,101.88 (100.0%)	50.22 (4.6%)	32.40 (2.9%)	9.78 (0.9%)	320.34 (29.1%)	141.51 (12.8%)	285.61 (25.9%)	304.72 (27.7%)	△42.69 (△3.9%)
증 감	191.05	10.06	18.29	△0.58	28.97	95.50	52.74	△6.02	△7.92

주 : 기타경비는 일반운영비+연구개발비+퇴직급여+기타영업비용+영업외비용-기타영업수익-영업외수익임

- 2025회계연도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공급단가(요금)는 m³당 693.03원이나 m³당 공급원가는 1,292.93원으로 약 85.51%의 요금인상요인²⁰⁾이 있음

<공급원가·공급단가 및 요금현실화율 변동 현황>

(단위: 원/m³)

구 분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공급원가	696.96	690.19	1,246.27	1,213.52	1,101.88
공급단가	1,292.93	1,257.84	693.03	644.74	628.88
요금현실화율(%)	53.91	54.87	55.61	53.13	57.03
요금인상요인	85.51	82.24	79.83	88.22	75.35

19) 요금현실화율(%) = [요금단가(원/m³) / 공급원가(원/m³)] × 100

20) 요금인상요인(%) = [(총괄원가 - 사용료수익) / 사용료수익] × 100

<가정용 상수도, 하수도 요금 비교 (2025년 기준)>

사용량 구분(㎥)	요금(원/㎥)		
	상수도	하수도	물이용부담금
30이하	580	400	170
30초과~50이하		930	
50초과		1,420	

- 현재 특별회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하수도사용료 수익 감소 등으로 인해 2025회계연도 기준 요금현실화율이 53.91%까지 낮아졌고, 최근 당기순손실이 연속('23~'25회계연도)하여 발생하며 재정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지속적인 시설 투자와 수선보수가 요구되는 하수도 사업의 특성상 총괄원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회계 운영이 가능하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 다행히 지난 '25년 9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가 개정²¹⁾됨에 따라 '26년부터 '30년까지 5년간 하수도사용료가 연평균 9.5%(㎥당 연평균 84.4원)씩 인상되어 향후 특별회계의 재정적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이번 요금 인상은 원가 대비 현저히 낮은 요금현실화율을 '30년까지 80% 수준으로 끌어올려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물재생센터 현대화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는바 향후 인상분 투입에 따른 특별회계의 수지 개선 효과가

21) [시행 2026. 1. 1.] [서울특별시조례 제9891호, 2025. 9. 29., 일부개정]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

- 참고로, 외부 회계법인이 작성한 2025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붙임 참조])의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과 대책방안을 살펴보면,
 - 당해연도의 평균요금은 총괄원가의 약 53.91% 수준으로서 총괄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85.51%의 효율인상 요인이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26~'30년까지 매년 9.5%씩 인상할 예정이라고 보고하고 있음.

[붙임] 서울특별시 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외부 감사보고서 39p
(경영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붙임] 서울특별시 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외부 감사보고서 39p
(경영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경영개선을 요구하는 사항과 대책방안

1. 하수도요금의 현실화

① 서울특별시하수도의 평균사용요금 및 총괄원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 요	금 액 (천원)	조 정 량 (톤)	톤 당 금 액
하수도사용료 수익	736,668,976	1,056,976,282	696.96
총 괄 원 가	1,366,591,147	1,056,976,282	1,292.93
조정량 1톤당 손실			595.97

②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해연도의 평균요금은 총괄원가의 약 53.91% 수준으로서 총괄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85.51%의 요율인상 요인이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2026년~2030년까지 매년 9.5%씩 인상할 예정입니다.

※ 특광역시 하수도사업 단체별 요금현황(2024년말 현재)

단 체	m ² 당 요금 (원/m ²)	m ² 당 원가 (원/m ²)	현실화율(%)
전 국	705.79	1,486.24	47.49
특광역시	710.12	1,098.65	64.64
서울특별시('24)	690.19	1,257.84	54.87
서울특별시('25)	696.96	1,292.93	53.91
부산광역시	752.41	1,057.34	71.16
대구광역시	620.19	781.26	79.38
인천광역시	710.68	928.68	76.53
광주광역시	610.30	975.89	62.54
대전광역시	706.91	721.21	98.02
울산광역시	886.24	1,150.31	77.04
세종특별자치시	1,106.69	2,825.29	39.17

※ 전국과 타시군의 자료는 행정안전부가 발행한 2024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 자료를 이용하였습니다.